도민의 기본권리 복지권은 우리 손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를 맞이하여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현안을 정책화하여 후보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함으로써 경기도민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참여단체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농아인협회,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아동복지협회,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경기도협의회 (가,나,다 순)

차례

공통의제	도민을 위한 정책 의제	
	1. 1인 고립 가구 종합대책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 정책 계획 수립 ···································	
공통의제	종사자를 위한 정책 의제	
	3. 선도적인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9
공통의제	경기도형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의제	
	6. 경기도 사회부지사 임명 및 사회복지직 전면 확대 배치 7.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8. 경기도 예산 책임성 강화 9.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31 35
분야별 의제	노인 분야 1.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2. 양로시설의 운영지원 현실화 ····································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3. 노인 무료급식 식당가 현실화 ···································	47
	4.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	50
	5. 경기도재가노인의 안정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재가노인종합복지센터 기능개편 및 추가배치 운영 ···································	52
분야별 의제	아동 분야	
	6.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57
	7. 보호연장아동의 교육 및 생활 안정화 지원	59

-- 복지경기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사회복지 정책제안

	8.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근로시간 연장 ···································
	9. 경기도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증설 ···································
분야별 의제	장애 분야
	10. 수어통역센터 업무환경 개선 - 행정사무원 의무배치 ····································
	11.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 71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12.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센터 ····································
	13.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 76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14. 경기도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충 ·················· 78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15.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지원 현실화 - 보건복지부 기준 준수 ·······81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
분야별 의제	지역복지 분야
	17. 경기도 균형발전 및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 추진체계 구축 (다문화) ····· 91 경기복지시민연대
	18. 지역자활센터 기본 인프라 100%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사업 확대 ···································
	19. 노숙인 리스타트 사업 활성화 ·······97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20. 경기도형 지역사회 기반 유연한 틈새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틈새지원센터' 설치 ··· 98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21.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법인 운영지원 ······99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2. 아동, 청소년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사회복지사 확대 ···································

공통 의제

도민을 위한 정책 의제



1인 고립 가구 종합대책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 정책 계획 수립

1인 고립 가구 종합대책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 연계된 정책 수립과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6,643.354가구) 수준으로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이며,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1인 가구 증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1인 가구 증가가 문제
- 특히 고독사¹⁾의 문제는 가족은 물론, 이웃, 행정 등 모든 이가 가해자가 되며, 오랜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물리적 주거 환경의 문제로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
-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문제는 죽음 이전의 삶 즉, 1인 고립 가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6.24.제정)와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2020.10.8.제정)가 제정되었으나, 내용이 형식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함.

□ 정책제안

- 1) 경기도 1인 고립가구 대책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 행정체계 구축(서울시 사례)
- 2) 1인 고립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1)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체계 구축과 강화
 - (2)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 수립과 그에 맞춘 맞춤형서비스 제공 (소득과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영역 등 다각도의 종합대책 포함)²⁾
 - ① 느슨한 연결망 확장(자조를 기반)과 촘촘한 돌봄 망(복지)의 균형적 배치로 고독사 예방 추진 - 중.저위험군
 - ② 지역사회 거점이 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연결고리 만들기 중.저위험군

¹⁾ 고독사란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²⁾ 서울시의 경우 구·중·저 위험군을 나누어 대책 강구하고 있음. 고위험군 지원 및 관리 : 한시적 생계비 지원, 건강관리, 자살고위 험군 등록 및 상담지원, 스마트기술기반 시스템 가동, 중위험군 지원 및 관리 : 일시적 생필품 및 밑반찬 지원, 교육지원 및 일자리 제공, 교육·상담. 자조 집단프로그램 제공 등 저위험군 지원 및 관리 : 커뮤니티 공간 제공, 느슨한 연계망 구축, 주거 공간 제공을 하고 있음(서울시복지재단, 2022)

- ③ 청년층. 중년층. 노인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중.저위험군
- ④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발견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고 위험군
-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기반 구축
- 4) 공공 주거정책과 사회복지가 연계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형 시스템 가동

□ 소요예산

-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100,000천원
- 고위험군 한시적 생계비 지원 : 긴급지원비 활용
- 위험군에 따른 맞춤형 시범 사업(시범사업 추진 후 전체 예산 추계) :2년
 - : 경기 남부. 북부 /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에 따른 권역 설정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 군에 적합한 시범사업 실시(6개 권역 별 3개동, 고, 중,저위험군 맞춤형 예산)
 - (고위험군) 촘촘한 발굴. 지원체계 구축
- 동주민센터 별 관리단 구성 (6개권역 * 3개동 * 10명 * 300,000원*12월 = 년 648,000천원 (중.저 위험군) 기존 지역사회 기관 협업 협약과 맞춤형 사업비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 6권역*2개소*40,000천원 = 년 **480,000천원**
- 실행 평가 연구비: 100,000천원

1인 고립 가구 종합대책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통합 연계된 정책 수립과 추진

□ 필요성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6,643.354가구) 수준으로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이며,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1인 가구 증가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1인 가구 증가가 문제이며, 1인 가구의 경우고독사 등 잠재적 위험 노출이 커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특히 고독사3)의 문제는 가족은 물론, 이웃, 행정 등 모든 이가 가해자가 되며, 오랜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물리적 주거환경의 문제로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31일에 제정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죽음은 가족은 물론, 이웃, 행정 등 모든 이가 가해자가 되며, 오랜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물리적 주거환경의 문제로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적인 문제다.

³⁾ 고독사란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가다가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경우"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3월 31일에 제정돼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0.6.24.제정)와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2020.10.8.제정)가 제정되었다.
 -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문제는 죽음 이전의 삶 즉, 1인 고립 가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한다.
 - 1인 가구에 대한 정의는 통계청이나 건강가정기본법(2018년 개정)이 공통으로 정하는 바는 "1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은 연령 및 성별 등 계층의 다양성으로 제도나 정책 마련의 어려움 있다.
 - 정부는 소득과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기획경제부, 2020) 크게 5가지 영역에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사회적 포용이나 삶을 지원하는 조사는 미흡하다(경기복지재단, 2020).
 - 촘촘한 돌봄(노년기)+느슨한 연결(청년.중.장년기), 복지+자조가 정교하게 결합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는 1인 고립가구 종합대책은 고독사 예방 대책과 자연스럽게 연결. 통합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2.7%인데 비해, 경기도는 27.6%로 전체 가구 대비 그 비중이 낮지만, 전국 1인 가구의 21%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경기복지재단, 2020).
 - 일본의 경우 1년간(2020년 현재) 30,000건의 고독사가 나타나 사회적 이슈다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객관적 통계기반 조사가 없으며, 유품정리사이자 고독사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김중철 전문가가 파악한 바로는 우나라의 경우도 2009년에 200 건이던 것이 2019년 2,880건(김중철 전문가)으로 거의 10배로 증가해 그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한다.
 - 1인 가구의 주된 욕구는 주거정책이 공통적으로 1순위였으며, 청년기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안전이, 중년기 1인 가구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대책이, 노년기 건강과 돌봄 문제 등의 주요 과제가 된다(경기복지재단, 2020).
 - 핵심 위험 대상층으로 '고단한 홀몸노인' (경제기반이 취약한 노년기 1인가구), '막막한 홀로서기' (이혼. 사별 비정규직 장년 여성) 대상층이다.
 - 아래 조례에서 보듯이 경기도의 경우 1인 가구 종합대책과 고독사 예방 등에 관한 조례는 이원화된 체계로 존재하며, 상호 연결된 통합적 체계가 필요하다.

□ 정책 제안

- 1) 경기도 1인 고립가구 대책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담 부서(행정체계) 신설(서울시 사례)
- 2) 1인 고립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 (1) 고독사 위험 가구 발굴체계 구축과 강화
 - (2) 고독사 위험군별 판단기준 수립과 그에 맞춘 맞춤형서비스 제공 (소득과 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영역 등 다각도의 종합대책 포함)4)

- ① 느슨한 연결망 확장(자조를 기반)과 촘촘한 돌봄 망(복지)의 균형적 배치로 고독사 예방 추진 중.저위험군
- ② 지역사회 거점이 되는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 연결고리 만들기 중.저위험군
- ③ 청년층. 중년층. 노인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 중.저위험군
- ④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발견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고 위험군
- 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통계기반 구축
- 4) 공공 주거정책과 사회복지가 연계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형 시스템 가동

□ 소요예산

-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 100,000천원
- 고위험군 한시적 생계비 지원 : 긴급지원비 활용
- 위험군에 따른 맞춤형 시범 사업(시범사업 추진 후 전체 예산 추계) :2년
 - : 경기 남부. 북부 /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에 따른 권역 설정과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 군에 적합한 시범사업 실시(6개 권역 별 3개동, 고, 중,저위험군 맞춤형 예산)
 - (고위험군) 촘촘한 발굴. 지원체계 구축
- ▼동주민센터 별 관리단 구성 (6개권역 * 3개동 * 10명 * 300,000원*12월 = 년 648,000천원
 (중.저 위험군) 기존 지역사회 기관 협업 협약과 맞춤형 사업비 지원을 통한 시범사업 실시
- 6권역*2개소*40,000천원 = **년 480,000천원**
- 실행 평가 연구비: 100,000천원

〈붙임〉 경기도 조례 비교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6.24 제정, 7.15일부터 시행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신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 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사항
- 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 및 사회친화환경 조성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시행 2020.10. 8.] [경기도조례 제6754호, 2020.10. 8., 제정]

-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 ·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

4) 서울시의 경우 구-중-저 위험군을 나누어 대책 강구하고 있음. 고위험군 지원 및 관리 : 한시적 생계비 지원, 건강관리, 자살고위 험군 등록 및 상담지원, 스마트기술기반 시스템 가동, 중위험군 지원 및 관리 : 일시적 생필품 및 밑반찬 지원, 교육지원 및 일자리 제공, 교육、상담. 자조 집단프로그램 제공 등 저위험군 지원 및 관리 : 커뮤니티 공간 제공, 느슨한 연계망 구축, 주거 공간 제공을 하고 있음(서울시복지재단, 2022)

-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 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 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 2.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
 - 3.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 4. 위기 상황 대처 및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 5.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에 의한다.
- 제8조(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 현자
-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
 - 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
 - 5. 방문간호서비스
 - 6.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 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군 및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통의제

경기도형 사회·주거 서비스가 연계된 지역사회통합형 주거복지 실시

경기도형 사회복지+주거 서비스가 연계된 지역사회통합형 주거복지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인권위원회는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지표를 점유의 안정성,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가 능성, 부담가능한 주거, 살만한 주거, 접근 가능한 주거 및 차별금지, 위치.문화적으로 적절한 주거, 공동체의 형성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의 요소를 일반적인 필요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김 명수 외,2008)
- 그러나,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아직 '최저기준'을 설정하는데 그치고 있고, 주택 공급 패러다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주거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점유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 임대 및 사회주 택, 매입임대 주택 등 다각도의 안정적 주택 공급이 계속돼야 하지만,
- 주거실태조사를 반영한 주택공급정책과 아울러 사회적 지원(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적 유대. 관계망 형성 등)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 제공이라는 틀에서 진일보한 지역사회 거주 환경개선과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기 위한 전환적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 정책제안

- 지역사회통합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과 추진체계 재구축
 - 1) '주거'와 '복지'행정 체계의 통합 또는 구조적 연계시스템 필수적 명시
 - 2) "주거복지전달체계 및 필수사업"지역사회 거주 관점과 예방적 관점에서 사업 내용 확장 : 물리적 주거 이상'삶'의 관점으로 전환
 - 물리적 환경 조성: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필수 배치 조항 추가
 - 소규모 주거+사회복지 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배치
 - 3) "전문 인력"에 주거 생활 지원 전문가+사회복지 전문가 인력 필수 배치
- 지역사회통합형 주거복지사업 추진
 - 1)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사회취약계층 거주 지역 단위별 "사회복지+주거 지원센터 또는 인력 배치"설치
 - 2) 물리적 환경 조성: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필수 배치 : 빨래방, 공유부엌, 생활용품 공유소 및 카페 등
 - 3) 주거관리 및 편의지원 사업과 느슨한 연대가 가능한 교류 사업 실시
 - 4)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소요예산

● 조례개정 및 추진체계 구축 : 경기도 행정비용

● 시범 사업 실시

- 광역센터 1개소 : **200,000천원(연간)**

- 지역사회 거점 센터 : 경기도 4개 권역 * 100,000천원 = **400,000천원(연간)**

- 실행평가 연구: 100,000천원

경기도형 사회복지+주거 서비스가 연계된 지역사회통합형 주거복지 실시

□ 필요성

- 집은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자 인간의 실존이 이루어지는 생활세계라고 한다. 이에, '거주한다'는 것은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으로 장소란 그 장소를 경험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린.헌트, 2007; 박경숙, 2010 재인용)
- 각종 자연재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야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공간을 확보하고, 전기, 상.하수도, 도로 등 편의시설과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하며, 사회적 의미로서 적절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부당한 사생활침해나 강제 퇴거 증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직장과 이웃관계, 적절한 문화생활을향유할 수 있는 등의 사회적 연계망으로부터 소외. 배척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문진영외, 2008)
- 인권위원회는 <u>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지표를</u> 점유의 안정성,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가 능성, 부담가능한 주거, 살만한 주거, 접근 가능한 주거 및 차별금지, 위치.문화적으로 적절한 주거, 공동체의 형성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의 요소를 일반적인 필요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다.(김 명수 외,2008)
- 이에 따라 주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서 **강제철거, 부담 가능하지 않은 주거비, 살만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 노숙, 주거권에서의 차별(김명수 외,2008) 등으로 기술하고 있다.
-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주거권이란 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이나 아이들, 여성들도 차별을 받지 않고 적절한 주거에 살 수 있어야 하며,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들까지도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뜻한다 (서종균, 1995; 유동철, 2010 재인용).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에 그치고 있다.
 - 주택법에서 최저 주거기준에 따라 주거민에 대한 보호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2003년도인데, '첫째,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 기준을 설정·공고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 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주택법 제5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수에 대한 최소 면적 등 최저 주거기준 제시)
- 주거와 관련한 법적 기술들(유동철, 2010에서 인용)
 - 헌법 제35조 제3항의 내용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세계인권선언 제25조에 '모든 사람은 의식주에 있어 적절한 삶의 질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유엔의 1971년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제4조에서는 '가족 또는 위탁 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및 공공부조 수급권과 시설입소 때에는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과 가깝게 운영되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 1975년 장애인 권리선언 제9조에서는 '가족이나 부모와 같이 생활하며, 모든 사회적·창조적 활동과 오락 활동에 참여할 권리, 특수한 시설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상적 생활과 가능한 한 환경 및 생활조건이 유사한 곳에서 생활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 2006년 통과된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에서는'이 협약의 다음 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여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이러한 권리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 및 참여의 완전한 향유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a)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거주, 거주지 및 동거인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에서 살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b) 장애인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 부터 소외 또는 격리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 내, 거주지,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 (c) 대중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와 시설은 동등한 기초 위에서 이용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법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1항에서는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하며,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

○ 주거실태와 관련한 이슈 검토

- 주거의 안정성을 위해 공공·사회주택, 매입임대 주택 등 <u>다각도의 안정적 주택 공급이 계속돼야</u> 한다.
- 주거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점유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저소득 월세 거주자의 특성은 우리 사회 약한 고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 계층에 대한 <u>주택공급정책과 아울러</u> 사회적 지원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 2017년 수원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월세자의 특성은 <u>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1인 가구일수록</u> 월세 비율이 높고, 연립, 주택일수록 월세 비율이 높고, <u>여성 가구주일수록</u>, 30세 미만일수록, 미혼과 이혼 상태일수록, <u>임시 일용직일수록</u> 월세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u>외국인</u>· 다문화 주거 취약계층 가구는 월세 비율(70.3%)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또한 임차보증금이 올랐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책은 월세로의 전환이었다.(소득 100만원 미만 35.6%, 소득100~200만원 23.7% 월세로 전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위기지원사업 보고서(2015)에 의하면 신청인의 47.3% 가 월세거주자이며, 51.5%가 한부모 및 1인 단독 가구였다. 그리고 긴급 지원비 항목의 78%가 주거비를 포함한 생계비의 지원이었다.
 - 저소득 월세 거주자의 실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회적 함의는 이 대상 계층을 잘 살피는 정책을 충분하게 마련하면 많은 사회적 문제(자살, 안전의 위협, 이웃과의 불화와 갈등, 비위생 등)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정책제안

- 지역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하는 주거복지
 - 개별화된 도시생활은 한편으로 '익명성'을 중심으로 당연한 듯 분화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어느 정도의 실명 사회를 회복하여 사회적 책임과 유대를 촉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 1인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진전 등에 대비하는 정책적 아젠다가 필요하다. 즉, 물리적 주거복 지를 넘어서 개인과 개인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원하고 교류할 수 있고, 나아가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홈 제도화 건의나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을 위한 지원주택 제안이나, 마을지원센터를 중심에 둔 근린지역 매입임대 정책 들은 결국 지역사회 거주와 삶이라는 틀 속에서 통합. 재구성 되어야 한다.
 - 미혼모 시설에서 아이를 낳은 미혼모는 일정 기간이 지나서 지역사회로 나와서 거주해야 하고, 노숙을 하다가 취업을 통해 자립을 하고자 하는 노숙인도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정착에 성공해 야 다시 노숙을 하지 않을 것이다.
 - 결국,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된 것이다.

-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 제공이라는 틀에서 진일보한 지역사회 거주 환경개선과 사회적 유대를 촉진하기 위한 전환적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 주거를 보급할 때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보다 다양하고 실용적인 지역사회 유용한 시스템과 기제들, 문화적 경험들을 펼쳐 놓는 일이 병행된다면 보다 확대된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 마을관리소나 공구 플랫폼, 동네 플리마켓, 동네부엌, 동네 회의실, 공동육아실, 지역사회 복지 기관과 같은 유용한 물리적 환경은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모이게 하는 광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통합형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개정과 추진체계 재구축
 - 1) '주거'와 '복지'행정 체계의 통합 또는 구조적 연계시스템 필수적 명시
 - 2) "주거복지전달체계 및 필수사업"지역사회 거주 관점과 예방적 관점에서 사업 내용 확장 : 물리적 주거 이상'삶'의 관점으로 전환
 - ①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 사회취약계층 거주 지역 단위별 "사회복지+주거 지원센터 설치
 - ② 물리적 환경 조성: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 필수 배치 조항 추가 : 빨래방, 공유부엌, 생활용품 공유소 및 카페 등
 - ③ "전문 인력"에 주거 생활 지원 전문가+사회복지 전문가 인력 필수 배치
 - ④ 주거관리 및 편의지원 사업과 느슨한 연대가 가능한 교류 사업 실시
 - 3)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소요예산

- 조례개정 및 추진체계 구축 : 경기도 행정비용
- 시범 사업 실시
 - 광역센터 1개소 : **200,000천원(연간)**
 - 지역사회 거점 센터 : 경기도 4개 권역 * 100,000천원 = **400,000천원(연간)**
 - 실행평가 연구 : <u>100,000천원</u>

공통 의제

종사자를 위한 정책 의제



선도적인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선도적인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공공 영역의 필수 인력임.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의 질은 국민의 행복한 삶과도 직결됨. 그럼에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운영주체, 지역, 담당부서 등에 따라 노동환경이 제각기 달라,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조례가 있는 시군은 13개 시군이 지만, 실제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4개 시군에 불과함.

□ 대안제시

- 선도적인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회복지사협회장 및 각종 사회서비스 직능단체, 노동단체 대표, 일반사회복지사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화. 공무원, 전문가 집단보다 민간 실무자가 60%를 넘도록 구성
 - 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4회 운영
 - 처우개선종합계획 등을 심의. 평가. 모니터링하는 구체적인 역할 부여
 - 31개 시군 위원회에 1명 이상 실무 민간 간사 배치. 31개 시군 위원회를 총괄할 광역 처우개선 위원회 협의체를 경기도에 구성하고 실무인력 3명(사무처, 노동, 인권 등) 배치

□ 소요예산 : 2.438.000천 원

- 광역 처우개선위원회 협의체 운영비: 175,000천 원
 - 전담인력: 관리자 50,000천 원×1명=50,000천 원, 실무자 40,000천 원×2명=80,000천 원
 - 운영비: 3,000천 원×12월=36,000천 원
 - 회의비 : 150천 원×15명×4회=9,000천 원
- 31개 시군 처우개선위원회 운영비: 2,263,000천 원
 - 전담인력 : 실무자 40.000천 원×1명×31개 시군=1.240.000천 원
 - 운영비 : 2,000천 원×12월×31개 시군=744,000천 원
 - 회의비 : 150천 원×15명×4회×31개 시군=279,000천 원

선도적인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단지 민간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 영역의 필수인력임.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의 질은 국민의 행복한 삶과도 직결됨.
- 그럼에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정부는 민간위탁이라는 미명 하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운영주체, 지역, 담당부서 등에 따라 노동환경이 제각각 달랐음.
- 따라서 이제라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을 점검하고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 고하였고 6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와 설치를 위한 세부 사항으로, 위원 구성, 임기, 위원회 역할 등이 포함되었음.
- 그러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 운영 경험을 볼 때, 시민 참여와 전문성 보장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위원회 설치 취지를 왜곡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처우개선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체계를 수립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20여 년이 넘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요구하였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처우개선 요구가 사회복지단체들의 제안에 따른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 과의 일시적 협의 등 단절적이고 비체계적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처우개선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 조례에 포함되었지만 실제 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는 4개 시군에 불과함.(2021 년 9월 말 기준)

구분	위원회 구성	위원회 미 구성
지자체	수원시, 양평군, 오산시, 화성시	고양시, 광명시, 광주시, 동두천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용인시, 포천시

● 13개 시군의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위원회 명칭을 통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우 개선위원회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강행 조항으로 구성되지 않은 7곳이 존재함. 또한 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할이 분명하게 명시된 위원회 명칭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3곳(고양시, 성남시, 광명시)은 정책자문위원회 혹은 위원회로 명칭이 명시됨.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우개선위원회를 대행하는 것으로 명시된 시·군이 4곳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 계획 등 지역복지와 관련된 총괄적인 민· 관협력 기구로 처우개선 관련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보임.

구분			TITI-II DI	
규정	위원회 명칭*	협의체**대행	지자체 명	
강행규정***	처우(개선)위원회	_	수원시, 안양시, 양평군, 오산시, 화성시	
	기타 명칭 위원회	_	고양시(정책자문위원회)	
임의규정****	처우(개선)위원회	_	동두천시, 용인시, 포천시	
	처우(개선)위원회	강행	안산시	
	처우(개선)위원회	임의	광주시	
	기타 명칭 위원회	강행	성남시(정책자문위원회)	
	기타 명칭 위원회	임의	광명시(위원회)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조항 없음		당 없음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이천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 처우(개선)위원회 : 지자체마다 처우위원회 또는 처우개선위원회와 같이 명칭을 달리함. 기타명치위원회 : 처우(개선)위원회가 아닌 다른 명칭을 사용함.

□ 대안제시

- 선도적인 사회복지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5명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사회복지사협회장 및 각종 사회서비스 직능단체, 노동단체 대표, 일반사회복지사가 참여하도록 규정화
 - 공무원, 전문가 집단보다 민간 실무자가 60%를 넘도록 구성
 -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하는 공동위원장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최소 연 4회 운영
 - 처우개선종합계획 등을 심의, 평가, 모니터링하여 실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로 운영
 - 31개 시군 위원회에 1명 이상 실무 민간 간사 배치
 - 31개 시군 위원회를 총괄할 광역 처우개선위원회 협의체를 경기도에 구성하고 실무인력 3명(사 무처, 노동, 인권 등) 배치
 - 광역 처우개선위원회 협의체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경험 있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한다. ~ 해야 한다.

^{**** ~} 할 수 있다.

^{*****} 평택시 : 지난 10월 15일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됨

□ 소요예산 : 2,438,000천 원

● 광역 처우개선위원회 협의체 운영비 : 175,000천 원

- 전담인력: 관리자 50,000천 원×1명=50,000천 원, 실무자 40,000천 원×2명=80,000천 원

- 운영비 : 3,000천 원×12월=36,000천 원

- 회의비 : 150천 원×15명×4회=9,000천 원

● 31개 시군 처우개선위원회 운영비: 2,263,000천 원

- 전담인력 : 실무자 40,000천 원×1명×31개 시군=1,240,000천 원

- 운영비 : 2,000천 원×12월×31개 시군=744,000천 원

- 회의비 : 150천 원×15명×4회×31개 시군=279,000천 원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단일)임금체계 도입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단일)임금체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은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양시설로 구분되며, 시설 운영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는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의존성이 매우 큼.
-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시설별·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직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무의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지역별, 시설유형별, 소관부서별로 상이한 인건비 지급 기준이 존재하여 '임금차별'이 발생함.
- 사회복지 종사자의 숙련도와 역량은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므로, 경기도 민의 복지 체감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임 금체계를 도입해야 함.

□ 정책제안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임금 기준을 포괄하는 '경기도형 사회복지종사자 표준(단일)임금체계'도입
 - 경기도형 임금체계에 지방이양시설을 우선 적용하고 국고지원시설을 점차 포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사업지침에 근거한 인건비를 준수하되 지방이양시설과의 급여 차액분을 수당 등의 형태로 보전
 - 표준(단일)임금체계는 매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 하며, 임금 수준은 공무원 대비 100% 점진적 지향

□ 소요예산

- 표준(단일)임금체계 도입: 67,700,000천 원(도비: 11,400,000천 원, 시군비 56,300,000천 원) * 2018년 기준
- ※ 단기 목표(임금 격차에 따른 수당 신설시 소요액) : 2.590.713천원
 - 2021년 기준, 경기도 내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의 임금 격차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경기도형 시회복지종사자 표준(단일)임금체계 도입

□ 필요성

-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특히 중요함.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장기근속 등 안정적 노동 환경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처우가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51.9%는 현재 보수가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직군보다 적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44.3%는 현재 보수가 성과에 비해 높지 않다고 인식하여, 대체로 처우 수준에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음. 한편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은 3,805만 원,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평균 연봉은 3,247만 원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평균 연봉 4,284만 원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임. 또한 사회복지사의 58.6%가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향상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임.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제안을 시급성과 중요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통한 단일(표준)임금체계 실현, 2순위가 법인인 력 인건비 추가지원 의무화, 3순위가 보조금 지급방식의 변경으로 나타남(2021 사회복지사 통계 연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시설은 민간위탁, 민간보조 등의 제도를 통해 공공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러나 소관 부처별·시설유 형별·사업지침별·지역별 인건비 지급 기준이 달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각의 현장에서 직무 차이가 거의 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보수 수준이 다르고 임금 차별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사회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단일(표준)임금체계 실현이라고 조사 된 결과는 새로이 떠오른 이슈가 아니라 이미 10여 년 이상 사회복지계에서 요구해온 문제임. 공적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숙련과 역량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함.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숙련도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근속 유인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표준임금체계 도입이 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 체감 수준의 증진과 직결되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국고지원시설과 지 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방이양시설로 구분함. 국고지원시설은 개별 사업 운영지 침에 의해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지방이양시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종사자의 장기 근속이나 인력의 숙련에 따른 적정 임금이 적용되기 어려워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간 임금차별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임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 제1호 각 목 법률을 근거로 설치한 시설
- * 국고지원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거주시설, 양로시설,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아동그 룸홈 등
- * 지방이양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 사회복지종사자 표준임금체계는 호봉제 임금체계로 시설 간, 직무 간 전문성과 난이도의 동질성을 골자로 하며,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시설별·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에서 직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11개* 사회복지시설유형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10개 유형에서 직무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물이 제시됨. 따라서 임금체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업무지침에 반영해야 함.
 - * 직무분석 조사대상(11개 유형, 34개 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노숙인요양 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 관(이철선 외. 사회복지분야 종사자의 시설별, 직무별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연구, 2016)
- 서울, 인천, 제주는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 인에 비해 동일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제시되었음5). 일부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으나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예정임.
 - 지방자치단체 자체 가이드라인 내 국고지원시설 포함 현황

	구분	서울	인천	제주
ZHOUOI	장애인거주시설	0	_	_
장애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	-
	노인양로시설	0	_	_
노인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_	-	0
	노인보호전문기관	0	_	0
정신	정신요양시설	0	-	_
노숙인	노숙인재활요양시설	0	0	0
	아동공동생활가정	0	0	0
ΛΙ⊑	아동학대피해쉼터	0	0	0
아동	지역아동센터	0	0	0
	아동보호전문기관	0	0	0
자활	지역자활센터	0	0	0
결핵·한센	결핵시설	_	-	-

* 자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1)

□ 대안제시

●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시대 필수노동자로서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국고지원시설 및 지방이양시설을 포괄하는 형태로 경기도형 표준(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함.

⁵⁾ 서울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생활임금 반영) 인천·제주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수준

-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안)

	사회복지시설 종사기	다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직위	생활시설 직위	종사자 규모	경력	
1급	 - 관장, 원장	의자	5인 이상	15년 이상	
18	년경, 년경 	원장	5인 미만	25년 이상	
	 - 관장, 원장	원장	5인 이상	15년 미만	
2급		년 6	5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사무국장	_	13년 이상	
	관장, 원장	원장	5인 미만	15년 미만	
3급	부장	사무국장	_	13면 미만	
	과	장	_	-	
4급	선	임	_	-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5급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시	나, 직업훈련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	-	
	상담지도원,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자격증 유)				
6급	생활시설 생활지도원(자격증 무),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안전관리인,		_		
08	운전기사				
_ 7급	생활보조원, 조리원(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위생원)	_	-	

● 경기도형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하여 지방이양시설을 시작으로 국고지원시설로 점차 확대해나가 되, 우선 단기목표로는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개별 사업지침에 근거한 인건비 지원 외에 추가 수당을 신설하여 지방이양시설과의 급여 차액분을 보전해야 함.

□ 소요예산 : 67,700,000천 원

- 표준임금체계 도입 : 67,700,000천 원(도비 : 11,400,000천 원, 시군비 56,300,000천 원) * 2018년 기준
- ※ 단기 목표(임금 격차에 따른 수당 신설시 소요액) : 2,590,713천원
 - * 2021년 기준, 경기도 내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의 임금 격차

(단위 : 천원)

그그리아니서 조근	경기도 국고지원시설	2021년 과장 103	년 과장 10호봉 기준 월 급여	
국고지원시설 종류	종사자 수(C)	국고지원시설(A)	지방이양시설(B)	[C×(B-A)]
계	5,789명	_	_	2,590,713
장애인거주시설	2,595명	2,849		498,240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6명	2,769		1,632
노인양로시설	66명	3,041		0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2명	1,822		2,438
노인보호전문기관	44명	3,041		0
정신요양시설	126명	2,870		21,546
노숙인재활요양시설	74명	2,793	3,041	18,352
아동공동생활가정	441명	2,410		278,271
학대피해아동쉼터	12명	2,410		7,572
지역아동센터	1,840명	2,160		1,621,040
아동보호전문기관	242명	3,041		0
지역자활센터	338명	2,622		141,622
한센시설	3명	3,041		0



위기 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위기 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 현장은 신체, 언어, 정서 등 다양한 폭력 위험으로 인해 사회복지종사자의 70.7%가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 근무환경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복지사는 37.8%에 그치며, 인권보장 수준도 5.7점(10점 만점)에 불과하고 직무만족도도 65.1점임.
- 그럼에도 위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및 지원기관이 없음.

□ 정책제안

- 위기 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 및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노무상담, 심리상담, 신속 대응 위기개입 시스템 구축, 조례 제·개정 등)
-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내에 인권지원센터 설치
- 사회복지시설 안전 대책 관련 경기도의 운영지침 강화

□ 소요예산 : 280,000천 원

• 사업비 : 80,000천 원(심리상담비 30,000천 원, 교육비 30,000천 원, 캠페인 10,000천 원, 홍보비 10,000천 원)

전담인력: 40,000천 원×2명 = 80,000천 원
촉탁인력: 50,000천 원×2명 = 100,000천 원

● 관리운영비 : 20,000천 원(매뉴얼 및 현판 제작,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위기 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종사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위기대응체계 구축

□ 필요성

- 사회복지 현장에서 신체, 언어, 정서 등의 다양한 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업무의 소진 등 위기 및 대리외상을 겪을 수 있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적,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외상 위험으로부 터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복지 직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함.
-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2019년 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보호 와 안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사업(보·안·관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의 위험 문제(인권과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체계가 필요함을 확인함. 도 내 지자체별 인권 및 안전문 제에 대한 개입역량과 수준이 상이함에 따라 인권보장 및 안전과 보호를 견인할 수 있는 컨트롤타 워가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 현장의 근무환경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37.8%만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사회복 지사의 인권보장 수준은 평균 5.7점(10점 만점)이고, 직무만족도는 65.1점으로 나타남. 또한 사회복지사의 70.7%가 언어·정서·신체 등의 폭력을 경험하는 등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에 노출 되어 있으며, 이러한 폭력 경험은 사회복지사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음(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연감,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 관한 종합 실태조사 연구).
- 그럼에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현장 종사자의 소진을 예방하거나,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정신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예방대책, 직무외상으로 인한 고통과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창구 부재 등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방법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 및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들의 햇복추구를 실현하고자 함.

□ 대안제시

- 위기* 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장 및 안전과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위기 :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발생하는 신체·언어·정서 등의 다양한 위협 상황
 - ** 지원체계 :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대처방법 제시 및 법적·제도적 정보 제공 등
 - 권익지원 체계 구축 :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무상담, 심리상담 등 실질적 지원, 신속대응 위기개입 시스템 구축
 - 예방 체계 구축 : 사회복지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 실시
 - 제도 체계 구축 :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조례 제개정 등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

- 사회복지종사자의 권리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내에 인권지원센터 설치
-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대책 관련 경기도의 운영지침 강화

□ 소요예산 : 280,000천 원

● 사업비 : 80,000천 원(심리상담비 30,000천 원, 교육비 30,000천 원, 캠페인 10,000천 원, 홍보비 10,000천 원)

● 전담인력: 40,000천 원×2명 = 80,000천 원● 촉탁인력: 50,000천 원×2명 = 100,000천 원

● 관리운영비 : 20,000천 원(매뉴얼 및 현판 제작,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공통 의제

경기도형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의제



경기도 사회부지사 임명 및 사회복지직 전면 확대 배치

경기도 사회부지사 임명 및 사회복지직 전면 확대 배치

□ 현황 및 문제점

- 각종 사회문제로 인해 커지는 복지수요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가 제도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접근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짐. 보건, 주거, 고용, 교육 등 여러 사회정책과 연관성이 높음에도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책임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어려움.
-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46.99%로 총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경기도 행정에서 복지행정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지표임.
- 공공복지제도가 360여 개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스스로 신청해야만 하다 보니, 도민 복지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 정책제안

- 통합적으로 복지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사회부지사 임명
- 복지정책관 신설 및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등 주요 부서에 사회복지직 전면 확대 배치
-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성 보장을 위한 국장급과장급 개방형 복지전문가 임명

□ 소요예산

● 비예산

경기도 사회부지사 임명 및 사회복지직 전면 확대 배치

□ 필요성

● 경기도의 전체 인구 수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35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 적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복지행 정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함.

- 세대구성 및 지역 간 격차 발생으로 인한 가구 변화에 따라 각 특성에 맞는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그에 따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변화하는 사회복지 환경과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도민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사회문제로 인해 커지는 복지수요로 사회복지제도는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제도별로 분산되어 있어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이 어렵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보건, 주거, 고용, 교육 등 여러 사회정책과 연관성이 높음에도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책임 있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어려움.
- 전국에서 인구수도 가장 많고 광범위한 지리적 조건과 31개 시군이라는 행정체계는 통일성 있는 행정을 실시하기 어려운 조건임.
- 경기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2020년 기준 46.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경기도 행정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행정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임에도, 이러한 예산을 효율적 으로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부족한 상황임.
 - 경기본청 사회복지비 비율 추이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율	32.24%	31.85%	33.9%	35.97%	46.99%

● 공공복지제도가 360여 개이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대상자가 스스로 신청해야 만 하다 보니,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도민 복지체감도가 낮을 수밖 에 없음.

□ 대안제시

- 다양한 주체가 같이 고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전략을 세우기 위해 통합적으로 복지행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사회부지사 임명
- 복지정책관 신설 및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등 주요 부서에 사회복지직 전면 확대 배치
- 복지정책이 가진 특수성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공공·민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과 사회복지서 비스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장급과 과장급 개방형 복지전문가 임명

□ 소요예산

● 비예산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위상 강화와 연계·통합을 위한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그 수준 또한 높다. 개별 기관이나 단일 협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긴급한 사업들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통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복지수준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도내 사회복지분야를 대표하 는 직능단체와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서울 외곽으로 동서, 한수이남, 한수이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어 연계하는데 있어 이동거리가 길고,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력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지역간, 단체간 특성(자원체계)들이 풍부하여 충분한 공유와 연계는 특장점을 극대화할수 있는 잇점 또한 있다.
- 현재 경기도 유관기관 각종 (협회(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들은 민간 사회복지의 구심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직능 및 유관기관의 경우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보유하지 못한 채 임대공간 또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내에 사무국을 두는 형태로 운영되어 재정적부담은 물론 불안정한 사무국 운영으로 업무 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 도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단체 간의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된 원스탑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능단체가 집결된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광주, 세종, 대전, 강원, 제주, 경남, 충북, 전북, 전남 등 11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이미 운영중에 있다.

□ 정책제안

- 기존 도 단위 민간영역의 대표성을 지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및 각 직능별 협회(연합회)의 역사성 및 활동역량 등을 고려하여 경기지역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 단위 사회복지 직능 및 유관단체의 물리적 공간의 통합(집중화)을 실현하는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위상 강화와 사업의 연계 및 통합적 전개를 위한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함.
- 지방재정법 개정('14. 5)이후 각종 사단법인 제외 운영비 지원불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들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보다 자율적인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명실공히 만·관이상호 보완적인 수평적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

□ 소요예산

(단위 : 원)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10,000,000,000	건물건립 (대지면적 포함)	도내 직능단체 20개 입주 등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위상 강화와 연계·통합을 위한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

● 필요성

- 경기도에는 많은 사회복지분야(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노숙인, 복지관, 자활 등)를 대표하는 직능단체와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유관기관(협회, 연합회, 사회복지협 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등이 경기도의 민간 사회복지실천의 구심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아울 러, 직능 및 유관단체들은 경기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시로 상호 네트워크하며 정책 의제 개발, 경기도 및 경기복지재단, 보건복지부 정책사업 수행,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평가, 투명하 고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논의, 제도 개선, 협력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의 정책과 제도 수립, 특화 연구사업 개발 및 추진 등 이러한 협력적 네트워크 실천은 '통합적인 행정관리 체계 마련'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지원'이 동시에 중요시된다. '통합적 행정관리 체계'는 동일한 정보체계망 속에서 정보에 대한 공유와 정책 및 제도 실현 과정에서의 협력 활동, 각 직능단체별로 연계가능한 자원을 발굴하고 공유, 공생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의 효과적인 연계 지원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 · 기관 · 단체 들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을 위한 유기적인 연계와 함께 서비스 실천가에 대한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일반교육장, 전산교육장 등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능 및 유관단체들이 유기적인 상호 관계ㆍ교류를 형성하고 실시간 협의가 가능한 회의구 조와 사무국 공간에 대한 통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직능 및 유관기관의 경우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보유하지 못한 채 임대공간이나 사회복 지시설 · 기관 내에 사무국을 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잦은 이동과 거점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무국 운영은 불안정해지고, 운영을 위한 임대료 및 운영비 등 재정적인 부담은 업무효율성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을 위해 종사자 교육훈련에 있어서 도 독립적이며 전문적인 교육훈련시설 부재에 따라 전문화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03년 경기도청 사회복지과에서 경기도사회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당시 설립

- 개요(안)로 건평 1,500평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축비 63억원 예산 계획을 제안함 현재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 인천, 광주, 세종, 대전, 강원, 제주, 경남, 충북, 전북, 전남 등 11개 시·도에서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전국 51백 만여명의 우리나라 인구 중 1,357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거점인 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 이에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단체 간의 통합된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기도 사회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창구 역할을 수행할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절실이 필요하다.

〈표 1〉 전국 시·도 사회복지회관 건립 현황

연번	시·도	형 태	규 모	이용내용		
1	전남	전남사회복지회관 유상임대 (월세) [신축]	- 사무실 : 1층 260㎡ - 푸드마켓 : 1층 136㎡ - 푸드뱅크 : 지하 1층 47㎡	사무실, 푸드마켓, 푸드뱅크 창고 - 전남복지재단에서 도로부터 위탁운영 중 - 전남복지재단,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남광역자활센 터, 장애인커피숍 등 입주		
2	서울	서울복지타운	- 2017년 2월 개관 - 지상 10층, 지하 2층, 연면적 1만 1,027㎡ 규모	-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노인복지협회,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 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복지재단 등 서울시 사회복 지직능단체 17개 기관 입주		
3	전북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소유 1층~5층 [신축]	- 지상5층 - 대지면적 : 1,128㎡ (341평) - 건축연면적 : 1,662.00㎡ - 26억 규모 - 2008년 건립	7개 사회복지단체 입주(임대)5층 교육장 전용1층 음식점 임대		
4	인천	사회복지회관 대학도서관 리모델링	- 지하1층, 지상 7층 - 대지면적 : 7,025㎡ (약2,129평) - 건축면적 353평 - 국비 800,000천원, 도비 4,580,000천원	-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노인보고전문기 관, 인천장애인재활협회, 인천수화통역센터 등 사회 복지 유관단체 16개 기관 입주		
5	경남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소유 [신축]	 지하 1층, 지상3층 대지면적 28,264㎡ 건축면적 3,164㎡ 사용승인: 2015.03.31. 76억 (국도비 75억, 자부담1억) 	 8개 사회복지단체 입주 전산실, 강의실, 세미나실, 소강당, 대강당 인권법률상담실, 사회복지정보도서관, 사회복지생산 품전시홍보실, 사회복지역사관 		
6	충북	충북 종합복지센터 위탁관리운영 [신축]	 지하1층, 지상5층 대지면적: 4,121㎡ 건물: 5,570.51㎡ 2006년 건립 70억 규모 	 충북아동복지연합회, 충북사회복지사협회, 충북사회 복지협의회,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10개 사 회복지단체 입주 유니버셜디자인체험관, 복지기기전시관, 회의실, 분 임토의실, 교육장, 전산교육장 		
7	제주	제주협의회 자가 [신축]	 지상 2층 대지면적 : 2,014㎡ 건축규모 : 연면적 597.20㎡ 12억200만원 2008년 건립 	- 사무실, 소회의실, 교육장		
8	강원	강원도사회복지협의 회 운영 [리모델링]	- 지하1층, 지상5층 - 건물규모: 3,450㎡ (1,045평) - 대지면적: 462㎡ - 건축면적: 2,735㎡(829평) - 국비 및 자부담 20억	- 10개 복지관련 단체 입주 -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담실		

연번	시·도	형 태	규 모	이용내용
9	대전	대전복지타운	- 대흥동 대림빌딩	-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 회,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 직능단 체 17개 단체 입주
10	세종	무상임대	- 지상 2층 - 대지면적: 552㎡ (167평) - 건축면적: 84㎡	- 세종시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 입주
11	광주	보훈회관 리모델링	- 지하1층, 지상2층 - 대지면적: 2,420㎡ - 건축연면적: 914.45㎡ - 2015년 리모델링	-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입주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17개 시·도사회복지협의회 중 11개 사회복지협의회가 자체 사회복지회관 내 입주하고 있음

● 대안 및 기대효과

- 경기도는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 31개 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의 특화사업과 정책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오랜 사회복지실천 역사와 다양한 인프라 형성, 그간의 네트워크 추진과정의 풍부한 경험 등은 민관협력의 활동으로 확산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으며 거점 공간의 확보로 인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함
- 도 산하 또는 31개 지자체 내 유휴공간이나 개발지역에 대한 조사과정을 통해 지역 내 사회복지 종합정보지원센터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과 도와 지자체 간의 MOU 체결을 통해 자원 연계를 위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음.
- 도 차원에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 또는 각 직능단체, 유관기관의 운영 사업비(시설 운영비 포함)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업재단 등을 통해 협력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함.
- 경기도 정책 아젠다 개발과 민관협력 활동에 대해 연구 및 조사, 시범사업 추진, 특화사업 연계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단체간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대상별, 영역별, 부문별 차이를 두지 않고 통합적 서비스 개발과 지원이 가능함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과의 연계 협력이 활성화되고 각 지자체 단위에 건립, 운영되고 있는 출연재단과의 사업적 연계와 협력이 용이해 짐
-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정적인 교육훈련 제공과 서비스 지원에 있어서의 서비스 중복 방지와 누락 및 조정 등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함.
- 각 직능단체와 유관기관들은 실시간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단체와의 연락을 통해 긴급하 게 사업 추진과 업무연락, 도 차원의 정보와 자원체계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협력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복지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됨.

□ 소요예산

(단위 : 원)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경기도사회복지종합지원센터	10,000,000,000	건물건립 (대지면적 포함)	도내 직능단체 20개 입주 등



경기도 예산 책임성 강화

경기도 복지재정 책임성 강화

- 경기도와 시군 간 복지 역할 분담 조정 기구 설치·운영

□ 현황 및 문제점⁶⁾

- 연구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감소가 두드러짐.
 - 최근 10년 동안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었음.
 -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높아진 반면, 시와 군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었음
-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에서 복지비가 높은 수준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는 보건 복지부의 산하 기관과 같은 구조가 됨. 재정구조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는 '자치'의 단위로서 재정 기반이 상당히 취약해졌음
- 복지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현금급여의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 속하는 복지 보조사업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무분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재정 압박이 상당함
- 사회안전망에 속하는 기초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비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액부담할 필요가 있고, 이와 달리 기초 단위별로 다양성을 활성화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에서는 기초자치단 체의 재정부담 비중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020).
 - 도에서 운영하는 시군조정교부금제도에서 시군별 기초복지재정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게 재원배분 산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 광역-기초간 복지재정 관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
 - 국비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재원분담 수준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치)광역-기초간 복지재정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협의체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기획관리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공정성과 지역사회 소통을 위해 지역주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6) 「}사회서비스분야 기초자치단체 분담방안 연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2020, 89-90, 223-224) 의 내용을 일부 발췌함

□ 정책제안

-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경기도-시군 지방재정부담심의회」설치 및 운영
- 「경기도-시군 복지사업 조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 소요예산

● 비예산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경기도의 복지재정 책임성 강화와 일관적인 집행을 위한 책임 조항 명시와 시.군.구와 협의 후에 결정하는 구조에 대해 명시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 필요

□ 현실태와 문제점

-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 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조)⁷⁾에 의하면,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 기준보조율을 30%로 정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그 보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된 바, 실제 비일관적으로 경기도의 시.군 보조금 비율이 책정되고 있으며, 당초 30%로 시작했던 경기도 사업 마저도 일정 기간 후에 일방적으로 10% 선으로 그 보조 비율이 축소뙨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고, 경기도와 시군구 간의 갈등이 심화됨.

□ 정책 제안

-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 경기도의 복지재정 책임성 강화와 일관적인 집행을 위한 책임 조항 명시
 - 재정분담 심의위원회와 시.군.구와의 협의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 필요
- 7) 제3조(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군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은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보조율을 조정하여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 보조금과 시·군비(수익자부담금액을 제외한다)를 합한 금액 중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소요예산

● 비예산

「경기도 - 시군 지방재정부담심의회」 설치 및 운영

○ 광역과 기초의 복지재정 분담협의를 위해 '(가칭) 경기도 - 시군 재정부담 심의회'설치·운영 필요

□ 현실태와 문제점

- 복지재정 집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31개 시군간 갈등 심화
 - 경기도 사업에서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불합리
 - 경기도 사업에 대한 시군의 재정분담 불합리
- 현행 31개 시군은 경기도 보조 복지사업에 대해 재정부담 의무만 지고 있고, 협의 근거가 없어 일방적 매칭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재정분권으로 경기도 재정 확대 → 신규 보조사업 증가 → 시군의 도비매칭 부담 증가의 악순환 우려
 - 경기도는 2019년 10월 회기중 시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 → 단, "도지사는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권 인정

□ 정책 제안

- 경기도 시군간 복지재정 분담협의를 위한 경기도 단위에 가칭 경기도 시군 재정부담심의회를 설치하여 유영합.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시군간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심의
 - 경기도 보조 복지사업의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경기도 주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 심의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경기도 시군간 파트너십 및 거버넌스 향상

□ 소요예산

● 비예산

「경기도 - 시군 복지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경기도와 시군의 합리적인 복지사무 배분을 위해 '(가칭) 경기도-시군 복지 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필요

□ 현실태와 문제점

- 그간 복지사업 조정과 관련된 논의들은 주로 보건복지부 17개 광역시도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 어 왔으나 17개 광역시도 - 226개 시군구간의 사업조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편 논의는 미흡하였음
-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간 사무배분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기에, 광역과 기초간 에 복지사업 조정과 관련된 협의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일례로 경기도 시군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체계의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 필요
- 이에 경기도 시군간 복지사무 배분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어 복지분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책제안

- 경기도 시군간 복지사무 배분 및 조정을 위한 협의·조정기구(가칭: 경기도 시군 복지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시 군) 현행 경기도의 복지 기능 중에서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 직접 지원 영역은 31개 시군에 업무 수행
 - (경기도) 시군 단위로 수행이 용이하지 않은 광역차원에서의 통합, 종합적 기능은 경기도의 역할로 기능적으로 재배분
 - * 지역별 서비스격차 축소방안과 서비스별 최저/적정 기준 마련 제공

□ 소요예산

● 비예산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역할 재정립

경기도형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역할 재정립

□ 필요성

-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 타 시도의 경우 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 통합 설립 및 운영
- 경기도 특수성을 고려한 두 기관의 사업 조정 및 기능 조정 필요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의 1기 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민간과의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서 경기도형 사회서비스원 정립 필요
- 경기도 복지 중심 허브로서의 경기복지재단 역할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재정립 연구 정책 교육 기능, 시설 위탁 및 운영 기능 민간 지원 기능이 분리 되어 있음
 - ※ 현재 경기복지재단은 연구, 교육, 거버넌스, 시설평가 지원사업 중심이며, 사회서비스원은 광역센터 및 시설, 사업 위탁 중심으로 운영
- 경기복지재단은 기능 재정립 복지재단은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사업의 시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복지와 무관한 사업들이 업무로 주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원의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경기복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조직 및 사업 재정립이 필요하다.
- 민간과 사업중복 문제 및 관계 설정 부족
- 경기도형 복지정책 비전 및 복지전달체계, 주요전략사업 미흡

□ 대안제시

-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복지재단 사업 기능 역할 재정립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복지전달체계 마련
 - 읍면동협의체 대상자 발굴시 지원체계 마련(관 서비스 대상자 선정, 지원 /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대상 선정전 혹은 미선정 대상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 / 민간 시설별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
- 광역단위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기구 설치(광역단위 사회복지시설 지원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워 보호(인권) 사업 및 보건 영역, 돌봄종사자 지원에 대한 공공위탁 필요

□ 소요예산

● 공공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용역비 필요

분야별 의제

노인 분야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현황과 및 문제점

- 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사업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은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수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이유로「경기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제외 되고 있습니다.
- 2019년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통한 지원센터를 설립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요 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보니 종사자들의 이직이 많고,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설운영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책제안

- 장기요양시설종사자에게도 현재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를 지급함으로 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와 경기도내 시군구와의 적절한 예산을 배분한다면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소요예산

(2021년 기준)

			<u> </u>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처우개선비	19,860,000,000	33,100 명 × 1인당 50,000	경기도 10%(년간 약20억) 시·군 90%(31개 시·군 할당 약 6억)

분야별 의제

양로시설의 운영지원 현실화

양로시설 운영지원 현실화

□ 현황과 문제점

-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무료 양로시설은 14개소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 상위 계층 실비입소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1」, 「노인복 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등 입소절차, 종사자 인력배치 기준, 관리비 및 시설운영비 등 양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대흐름과 현장의 변화에 맞게 정책이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재 양로시 설은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지침으로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1) 시설안전 및 건물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리인에 대한 인력배치 지원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타 직종의 종사자가 안전관리를 함께 관리 하는 등 업무 과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2) 입소 어르신 병원진료(통원포함) 등 외부 업무 시 장애인전용주차스티커 미 발급으로 인해 항상 긴급 상황 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발급대상자에 노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양로시설은 등 외자로 분류되어 주차표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현행 법률은 노인에 대한 서로 다른 발급 기준으로 상대적 차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 3)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시군구 주민이 양로시설 입소 신청을 할 경우 본 거주지 외 타 시군구 양로시설이 있는 곳에 의뢰를 할 수 있으나, 시설입소 관련하여 관할 주소지 거주자 제한으로 시·군·구간의 복잡한 행정적 절차와 복잡한 합의 과정을 통해 입소절차가 이루어지 고 있으며, 입소가 가능한 양로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의뢰를 할 수 없어 개인의 거주지 선택권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4) 직종별 구분 없이 지출되는 시설관리 운영비 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과 양로시설 비교 시 2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지원되는 연 936,200원(월 78,016원)은 매우 비현실적 기준입니다.
 - 5) 타 직능 생활시설인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10명이상인 시설에 회계업무 등 전담인력 사무원을 1명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양로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 사무원은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 1명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실제 지급된 적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이다.

□ 정책제안

- 시대변화 및 현장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입소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고자함.
 - 1) 시설 내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14개소 무료 양로시설에 관리인 1명 배치 및 인건비 지원
 - 2) 노인주거복지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발급 법적지원 마련 (※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시의 발급 대상 및 절차)3항 라 노인주거복지시설"포함 법적기준 및 경기도 차원에서 별도지침 마련시행

변경 전	변경 후
라.「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3)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을 위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양로시설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개선 필요
- 4) 타 직능시설과 관리운영비 예산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소요되는 예산의 현실화를 위해 증액이 필수적이며,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동일한 처우 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예산지원이 필요.

1인 관리비 지원기준			
양로시설 관리운영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비고	
1인 936,200 (월 78,016)	1인 2,425,000 (월 202,083)	- 2022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2021년 1인 2,366,000원 단가에 2.5%인상 적용 (시설 당 기본지원 : 입소자수 × 2,425천원/년) - 30인 초과시설 : (입소자수 - 30) × 1,019천원/년	

5) 타 직능 생활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인력배치 기준의 현실화를 통해 양로시설의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실적 인력배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필요.

구분	사무원 배치기준
양로시설	1명(<u>입소자</u> 100명 이상인 경우 한정함)
아동복지시설	시설당 1명(입소자 10명이상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시설당 1명(정원 30인 이상 시설)

□ 소요예산

1) 양로시설 관리인·사무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관리인 인건비	475,304,620	- 연봉 : 23,234,400×14개소 = 325,281,600원 - 퇴직금, 4대 보험 시간외수당 등 = 150,023,020원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리인 1호봉기준
사무원 인건비	475,304,620	- 연봉 : 23,234,400×14개소 = 325,281,600원 - 퇴직금, 4대 보험 시간외수당 등 = 150,023,020원	-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관리인 1호봉기준
관리 운영비		1인 2,425,000 (월 202,083)	시설별 입소인원이 상이함으로 예산액 제시하지 않음



노인 무료급식 식당가 현실화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식당가 현실화 추진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를 지향함에도 고령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정책은 장기요양보험요율인상, 중장년종합서비스지원, 코로나상황을 고려한 휴대용 와이파이지원사업 세가지만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상생활 서비스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 지역사회 기반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중 무료급식은 사회복지 서비스 중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급식단가를 살펴볼 때 2022년 초등학교 5,256원 중학교 6,043원 고등학교 6,225원이며 특히 결식아동의 경우 2021년도 기준 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동의 경우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더욱이 2022년 부터는 GMO제외한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하고 있다.
- 같은 관점에서 노인급식단가를 살펴볼 때 무료급식의 경우 평균 3,300원 도시락배달 3,500원으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며 건강한 먹거리 제공보다는 단가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되어 있어, 영양공급이 불충분하여 신체적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공기관에서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저렴한 음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 영양섭취는 노인의 육체와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가 필요하고 현실적인 단가산정, 권장 영양량 충족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정책제안

- 지역어르신의 균형있는 기초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
 - 1) 지역별로 운영 환경의 차별을 받지 않고 어르신의 기초적인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급식단가 상향 조정
 - 2) 최근 노인의 영양관리 및 식사지지원을 위해 무료급식비용 현실화를 검토한 시도의 수준에 고려하여 경로식당 4,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4,500원으로 시군별 무료급식단가 통합적 관리운영 체계마련.

노인복지관 무료급식 식당가 현실화 추진

□ 필요성

- 노인의 경우 신체구성 성분이 변화하고 각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특별히 영양관리와 직결되는 식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은 의료비 용 절감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경기도의 1일 평균 무료급식 대상자는 평균 17.136명 정도이며,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와 독거 노인의 증가로 무료급식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8)
-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으로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 물가변동에 따른 대응과 효율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는 농촌의 경우 영양공급을 부합하는 다양한 먹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도시의 경우 에도 지역물가에 따라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무료급식 단가는 시군별 상황이 아니라 무료급식 현실화에 따른 통합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도"를 지향함에도 고령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정책은 장기요양보험요윸인상, 중장년종합서비스 지원, 코로나상황을 고려한 휴대용 와이파이지원사업 세가지만 추진되고 있어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상생활 서비스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 특히 노인의 일상생활 서비스 중 급식은 가장 기본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지만 사회 환경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단체급식이 양적으로 팽창하였지만, 급식의 지원단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아동급식단가를 살펴볼 때 2021년 보건복지부 강득구 의원실 자료에서 살펴 보면 2022년 초등학교 5,256원 중학교 6,043원 고등학교 6,225원이며 특히 결식아동의 경우 2021년도 기준 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아동의 경우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더욱이 2022년부터는 GMO제외한 건강한 먹거리로 제공하고 있다.
- 같은 관점에서 노인급식단가를 살펴볼 때 무료급식의 경우 평균 3,300원 도시락배달 3,500원으 로 약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아동급식에 비해 낮은 단가 및 물가상승분 미반영 등의 요인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단가 산출이 필요하다.
- 실제적으로 경기도 내 있는 복지관에서는 회원으로부터 육고기 질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나 현실적 으로 운영비를 제외한 3,000원 단가에서는 질 좋은 고기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단가가 매우 낮으며, 더욱이 현재 물가상승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8) 2019}년 경기도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경기복지재단), 오민수외 2명

^{9) 2021}년 8월 15일 메디컬월드뉴스 "2021년도 지자체별 결식이동급식 단가 천차만별"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3949

- 2022년 기준 17개 시도중 전라북도의 경우 2022년 무료급식단가 현실화를 검토하면서 무료경로 식당가 3,5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4,000원으로 전년대비 항복별 1,000원씩을 인상하였고, 전라남도의 경우 무료경로식당 4.5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단가를 개선하면서 무료경로식당 기준 2018년 2,700원 2021년 3,000원을 적용하고, 2021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500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현실화 할필요가 있고, 시군별 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통합적 운영지원이 필요하다.
- 이에, 현재의 지원단가는 특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아닌 타 광역 시·도와 비교하여 관행적으로 결정한 단가임으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사업의 지원단가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대안제시

- 지역어르신의 균형있는 기초건강관리와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급식 단가 현실화 1) 지역별로 운영 환경의 차별을 받지 않고 어르신의 기초적인 식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급식단가 상향 조정
 - 2) 최근 노인의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을 위해 무료급식비용 현실화를 검토한 시도의 수준에 고려하여 경로식당 4,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배달 4,500원으로 시군별 무료급식단가 통합적 관리운영 체계마련.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내용	산출근거	예산액	도비10%	시군비90%	비고
무료급식	4,000원 × 20,204명 × 247일	19,961,552천원	1,996,155천원	17,965,397천원	
식사배달	4,500명 × 11,429명 × 298일	15,326,289천원	1,532,629천원	13,793,660천원	
합계		35,287,841천원	3,528,784천원	31,759,057천원	

^{*} 산출근거 인원은 경기도청 최근 추정인원임.

분0별 의제 4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노인일자리시업 담당자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 필요성

- 경기도 노인일자리 담당자(비정규직)는 약 600명으로 정규직 인력보다 많은 종사자가 기관의 일자리 사업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계약직 인원이 절반 이상으로, 업무 이직률이 높고 업무 연속성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간의 임금 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함.
-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규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의 근무조건 안정화를 위해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일자리사업은 정책사업으로 특성상 당해연도 사업량에 따라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 력) 수가 결정됨. 그로 인해 시니어클럽의 경우 정규직 수보다 비정규직 수가 많아지는 비정상적인 조직현상이 나타남.
- 매년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업량이 증가하는 만큼 정규직도 함께 늘어나야하는 상황이나 정규직 자리는 동결, 계약직만 기하급수적 으로 늘어나는 현상으로 기관에서 계약직 인력을 관리하기에 현실적으로 직원 처우 문제 등에 있어 정규직들과의 갈등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사업량에 따라 계약직 인력 수가 결정됨에 따라 1년 혹은 2년이면 계약을 종료해야 하고, 그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 및 참여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특성상 시장형 사업의 경우 매장 운영이나 사업장운영 등에 따른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상주하여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수시로 바뀌는 관리인력으로 안정적 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임.

□ 대안제시

● 현재 경기도 노인일자리 담당자(비정규직)는 약 600명으로 전체 인원 중 50%(300명)를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경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 도록 제안함.

- 무기계약직 전환 시에는 근무자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충전을 요함.
- 이에 따른 예산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비50%:도비25%:시비25%로 책정되어 있으나 경기도는 현재 국비50%:도비7.5%:시비42.5%로 도비를 2.5%올리면(10%) 시비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약 50%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변경 가능함.
- 경기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담당자(비정규직)는 사회복 지사를 꿈꾸고 지원한 청년세대와 경력단절 여성들로 구성되어 만약 이들이 정규직화 된다면 우리 사회에 경기도가 선제적 정책을 펴가는 것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음.

□ 소요예산

●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필요 예산

(단위 : 천원)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인건비	1,858,560천원	-기본급 상승분	2022년
상승분		: 2,695,200원×300명=808,560천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규직전		-퇴직금, 4대보험, 제수당	인건비 가이드라인 3호봉
환 시)		: 3,500,000원×300명=1,050,000천원	기준

분야별 의제 5

경기도재가노인의 안정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재가노인종합복지센터 기능개편 및 추가배치 운영

경기도재가노인의 안정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 현)경기도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55개소) ⇒ '재가노인종합복지센터'로 명칭 및 기능개편, 미설치 지역(경기남부 : 김포, 광명, 과천, 양평 / 경기북부 : 연천, 동두천, 가평) 추가 설치 운영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인구와 노인1인 가구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돌봄 부재 취약노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등급 내자의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나. 2020 년 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인하여 등급외자에게 제공되었던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돌봄 부재가 증가되었고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절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장기요양등급내자 노인 중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 저소득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지불 능력 부재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이들 대부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에 포함되며 이들을 위한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가 필요함.
- 재가노인지원사업의 분절된 전달체계의 문제 및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와 화경변화에 따라 현)재 가노인지워서비스 기능 개편 및 확대를 통해 고령화 시대의 재가노인 삶의 질 향상 및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정책제안

- 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재가노인종합복지센터로 명칭 및 기능개편, 미설치지역 추가설치 운영
 - 전무 사례관리, 서비스 통합관리, 공공 일자리창출, 서비스 영역 및 대상확대, 전무성 강화, 자원활용 확대 등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커뮤니티케어에 따른 지역사회 역할 증대로 인한 종사자 추가 배치 (key working의 system 구축 - 어르신 거주 지역내 지역주민으로 준사례관리자 배치 (마을 또는 동단위로))
 - 1개소당 10명 이상 인원 확충

□ 조직체계

- 기관장 1인
- 부서장 2인(재가돌봄팀1인/ 재가여가 문화예술팀 1인)
- 부서인력 : 부서인력 12인(돌봄팀/주거주택 · 이동지원/상담·가족지원/총무인사후원개발/재가여가/재가평생교육/문화예술)

□ **소요예산**(1개소당)

шншо	산출근거					
세부내용	22년	23년	24년	25년		
재가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비용	센터당 1,000,000천원 x 55개소	센터당 1,000,000천원 × 60개소	센터당 1,000,000천원 × 65개소	센터당 1,000,000천원 × 70개소		
	55,000,000천원	60,000,000천원	65,000,000천원	70,000,000천원		
비고	■ 23년 미설치 지역 5개소 설치 ■ 24년 미설치 지역 노인인구대비 돌봄지원 부족지역 5개소 설치 ■ 25년 노인인구대비 돌봄지원 부족지역 5개소 추가 설치					

분야별 의제

아동 분야



이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적용

□ 필요성

● 경기도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임금 차별 개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타 복지시설과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현황 및 문제점

- 근무형태가 유사한 아동양육시설(생활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 간의 심각한 임금차별
 - 시설 근무형태 : 생활시설
 - 시설 근무시간: 231시간(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이루어짐
 - * 월기준(한국사회복지연구원 조사. 2017년도 '문재인정부 좋은 일자리 세미나')
 -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로 아동공동생활가정과 동일한 생활시설이고, 기능도 동일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은 임금에 있어 인건비 가이 드라인을 적용받고 있고, 아동공 동생활가정은 적용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종사자의 근무여건은 근무시간과 업무량, 급여 등에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열악한 상황임.
 - 아동양육시설은 이미 인건비가이드라인 비율 100% 지급함(지방이양사업)
 - 서울시와 인천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해 인건비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어 인근 지역과 임금격차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임.

□ 정책제안

●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단일임금제(호봉제) 계획의 조속한 시행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시 설 (개소수)	직 위	인원	예산액	산출기초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	149명	17.9억원	149명*81만원*12개월(x3.8%x19%)=178,894만원
(149개소)	보육사	297명	2.2억원	297명*5만원*12개월(x3.8%x19%)=22,012만원
합 계		446명	20.1억원	

- 산출기준: 호봉제 도입에 따른 년간 추가 소요예산
- 적용경력: 시설 종사자 대상 사회복지시설 평균종사 경력 반영
- 적용기준: '21년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
- 인상율: 평균 3.8% (매년 호봉승급 2.4%, 가이드라인 전년대비 인상율 1.4% 반영)
- 사용자부담금 (법정부담금, 퇴직적립금): 약 19% 포함 /특수근무수당(월10-20만원), 처우개선 비(월5만원) 별도



보호연장이동의 교육 및 생활 안정화 지원

보호연장이동의 교육 및 생활 안정화 지원

□ 필요성

•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은 일반수급자로 수급자의 자격기준 산정을 시설재원여부와 별개로 일반수급자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보호연장아동들이 직업훈련활동이나 자산형성을 할 시에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또한, 보호연장아동들을 위한 학습활동비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은 아동이 연장보호를 원할시에 연장보호 기능을 해야 하는 상황임.
- 시설재원기간 동안 보호연장아동이 인턴활동 등의 근로활동비나 파트타임잡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함.
- 보호연장아동들이 자립준비를 위해 자산형성을 할시에도 자산금액이 일정기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함.
- 보호연장아동들이 학업을 자퇴할 경우 성인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비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함
-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양육시설 아동들을 위해 경기도 학습활동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중에 보호연장아동은 매월 교육비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 정책제안

- 시설 연장보호로 인한 재원기간 동안의 근로활동소득 및 자산은 아동의 자립준비금을 위한 활동으로 인정하는 예외기준을 마련, 기초생활수급비가 끊길 경우 생활비보전금 정책 마련.
- 경기도 학습활동비 보조금 대상에서 보호연장아동 포함.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정 책	보호연장아동(21년기준)	예산액	산출기초
학습활동비 보조금	62명	1.4억원	62명*200,000*12개월
생계급여 보전금	_	_	N명*583,440원(2022년 생계급여)

분야별 의제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근로시간 연장

지역이동센터 돌봄 교사 근로시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 규모에 따라 2~3명의 법정종사자 배치 (29인 이하 2명, 30명 이상 3명)
- 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아동방임 및 학대 등 사건·사고의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아동·청소년들에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 역할 수행이 어려움
- 종사자의 처우 및 업무량, 다수의 아동 관리 등으로 종사자의 소진과 잦은 이직이 발생
- 코로나 발생 이후 온라인 학습 등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
-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 운영으로 아이들의 등원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종사자의 소진 문제 대두

□ 정책제안

- 돌봄 교사의 근로시간 연장
 - 1) 돌봄 교사의 근로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
 - 2) 근로시간 연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인력난 해소 및 돌봄 교사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급여	9,196,800	958천원 × 12개월 × 800개소	
4대보험 기관부담금	768,000	80천원 × 12개월 × 800개소	
퇴직적립금	979,200	102천원 × 12개월 × 800개소	
합계	10,944,000		

지역이동센터 돌봄 교사 근로시간 연장

□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법 52조 8항에 근거하여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곳임.
-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들은 주로 방과 후 돌봄과 생활지도, 학습지도, 급식지도, 장보길, 행정업무, 아동 관찰 및 상담, 학부모 상담 및 부모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연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보호, 교육, 정서지원, 문화)과 평가, 차량 운행(1~3시간), 후원자 발굴과 관리, 자원봉사자 발굴과 관리, 파견인력 슈퍼비전, 3주기 평가와 연 1~2회 지자체 점검 및 위생 점검, 개별아동관리 및 수준별 교육과 퇴소 아동 관리, 장애아동이나 다문화 외 다양한 환경의 다양한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아동 돌봄을 위해 주 5일 기준 시설장 1일 9.4시간, 생활복지사 9.1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추가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음.
- 현재 경기도에서 하루 4시간 돌봄 교사 파견하고 있음
- 단시간 근로와 연계 파견된 형태는 특수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의 취지와는 걸맞지 않으며 서비스의 질적 평가에도 저평가 되어 사업 전환이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설 규모에 따라 2~3명의 법정종사자 배치 (29인 이하 2명, 30명 이상 3명)
- 인력 배치현황을 보면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아동방임 및 학대 등 사건·사고의 지킴이 역할 강화 및 아동·청소년들에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적 역할 수행이 어려움
- 종사자의 처우 및 업무량, 다수의 아동 관리 등으로 종사자의 소진과 잦은 이직이 발생
- 코로나 발생 이후 온라인 학습 등으로 인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
- 지역아동센터는 긴급돌봄 운영으로 아이들의 등원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온라인 학습으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종사자의 소진 문제 대두

□ 대안제시

- 돌봄 교사의 근로시간 연장
 - 1) 돌봄 교사의 근로시간을 현재 4시간에서 8시간으로 연장
 - 2) 근로시간 연장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인력난 해소 및 돌봄 교사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급여	9,196,800	958천원 × 12개월 × 800개소	
4대보험 기관부담금	768,000	80천원 × 12개월 × 800개소	
퇴직적립금	979,200	102천원 × 12개월 × 800개소	
합계	10,944,000		



경기도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아동학대 피해아동 쉼터 증설

경기도이동권리보장원 설립

□ 필요성

- 도내 아동보호,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통합(종합)대응체계(컨트롤타워) 마련 필요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권리실현 중심기관 설립이 요구됨.
- 아동복지 유형별 기관중심의 아동정책 및 서비스에서 벗어나 시대적인 요구에 따라 지속가능한, 분절적이지 않은 공적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마련 시급히 요구됨
- 분절된 기관의 통합운영에 따른 예산절감효과

□ 현황 및 문제점

- 설립근거 : 2018.12.27. '아동권리보장원'설립「아동복지법」국회 통과
- 중앙아동권리보장원 설치 경과
 - 2019.06.28.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총회
 - 2019.07.16.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및 1차 통합 중앙입양원, 아동자립지원단,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실종아동전문기관
 - 2020.01.01. '아동권리보장원'통합 완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디딤씨앗지워사업단

● 문제점

- 아동복지 유형별 정책 및 서비스 실시로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인 수행 불가피함.
- 유형별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산발적 사업수행으로 아동복지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실천의 어려움 발생 및 연계의 비효율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발생

□ 대안제시

- 아동권리실현의 중심기관인 경기도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을 통하여
- 아동중심의 아동성장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공적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형성하여
- 모든 아동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든다.

이동학대 피해이동 쉼터 증설

□ 필요성

-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충분히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하에서 물리적, 심리정서적으로 돌봄과 치료 를 통해 회복된 이후에 가정복귀 혹은 분리조치가 필요함
-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 도모가 요구됨
- 특히 성학대 피해아동 및 장애아동으로서 학대를 받은 아동에 대한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과 서비스가 필요함
- 아동학대 주요통계(2020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신고접수건수는 전국의 23.6%, 전 국 분리조치 3.926건에 비교해 볼 때 경기도의 쉼터는 아동학대아동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음.

□ 현황 및 문제점

● 문제점

- 장애아동의 경우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나, 비장애아동과 함께 보호함으로써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전문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성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신체적·정서적 학대아동과 함께 보호됨으로써 개별화하여, 전문성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과 돌봄을 함에 있어 비효율성 발생
- 쉼터가 아닌 공동생활가정이나 양육시설에 보호함으로써, 아동권리 차원에서 볼 때, 이미 긴급 상황을 벗어나 분리보호조치 되고 있는 기존보호아동들의 돌봄(심리정서적으로 안전하고 안정 된 환경아래서의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대안제시

-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증설 시군별 2개소
- 장애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최소한 1개소
- 성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최소한 1개소

□ 첨부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학대 유형

13,000 10,000 7,000 4,000 3,807건 695건 2,737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아동학대 대상자 특성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피해아동 상황)

⟨표 1-3-13⟩ 피해아동 상황

(단위: 건, %)

			(단위 : 건, %		
상세	20	20			
최초	최종				
원가 <mark>정</mark> 도	보호 유지	25,916	(83.9)		
최초	최종				
원가정보호	가정복귀	82	(0.3)		
분리조치	가정복귀	680	(2.2)		
기타	가정복귀	36	(0.1)		
소	계	798 (2			
최초	최종				
분리조	2,381	(7.7)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445	(1.4)		
분리조치	분리조치	1,085	(3.5)		
기타	분리조치	15	(0.0)		
소	3,926	(12.7)			
기타			(0.6)		
사망"			(0.3)		
계					
	최초 원가정보호 보리조치 기타 소 최초 원가정보호 보리조치 기타 소 지 하는 소 사업보호 보리조치 기타 사망*	원가정보호 유지 최초 최종 원가정보호 가정복귀 분리조치 가정복귀 기타 가정복귀 최초 최종 분리조치 유지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분리조치 분리조치 기타 분리조치 기타 보리조치 기타 사망'	최초 최종 원가정보호 유지 25,916 최초 최종 최종 원가정보호 유지 82 원가정보호 가정복귀 82 분리조치 가정복귀 680 기타 가정복귀 36 소계 798 최초 최종 분리조치 유지 2,381 원가정보호 분리조치 445 분리조치 분리조치 1,085 기타 분리조치 15 소계 3,926 기타 사망' 90		

-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 분리조치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 가정복귀: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보호 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 기타 : 소년원 입소, 행방불명(예: 기출 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표 1-1-2〉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

——————————————————————————————————————						(단위 : 건, %)
시도	응급아동학대	배의심사례	아동학대의	아동학대의심사례		
서울	159	(8.6)	4,008	(10.8)	4,167	(10.7)
부산	34	(1.8)	2,078	(5.6)	2,112	(5.4)
대구	66	(3.6)	1,653	(4.5)	1,719	(4.4)
인천	311	(16.7)	2,788	(7.5)	3,099	(8.0)
광주	11	(0.6)	847	(2.3)	858	(2.2)
대전	94	(5.1)	1,551	(4.2)	1,645	(4.2)
울산	22	(1.2)	1,380	(3.7)	1,402	(3.6)
경기	564	(30.4)	8,628	(23.3)	9,192	(23.6)
강원	51	(2.7)	1,353	(3.6)	1,404	(3.6)
충북	201	(10.8)	1,087	(2.9)	1,288	(3.3)
충남	64	(3.4)	2,310	(6.2)	2,374	(6.1)
전북	56	(3.0)	2,397	(6.5)	2,453	(6.3)
전남	82	(4.4)	2,286	(6.2)	2,368	(6.1)
경북	96	(5.2)	1,779	(4.8)	1,875	(4.8)
경남	40	(2.2)	1,703	(4.6)	1,743	(4.5)
제주	3	(0.2)	856	(2.3)	859	(2.2)
세종	4	(0.2)	367	(1.0)	371	(1.0)
총계	1,858	(100.0)	37,071	(100.0)	38,929	(100.0)

분야별 의제

장애 분야



수어통역센터 업무환경 개선 - 행정사무원 의무배치

수어통역센터 업무환경 개선 - 행정사무원 의무 배치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VI.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센터의 인력 지원 기준
 - 5명 이상[센터장 1인, 수어통역사 4인 이상(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종사자 배치기준(3명 이상)은 반드시 준수
 -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 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
- 수어통역사는 대부분 외근과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 발생
-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는 행정업무와 수어통역 업무를 병행하여 수어통역사 채용의 어려움 발생
- 지자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인력 지원 기준에 따라 행정인력 증원 인정하지 않음
- 수어통역사 대부분은 행정업무 부담이 없는 프리 수어통역사 선호

□ 정책제안

-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VI.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센터의 인력 지원 기준
 - 6명 이상[센터장 1인, 수어통역사 4인 이상(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 행정사무원 1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종사자 배치기준(4명 이상)은 반드시 준수, 청각장애인통역사 1인을 포함, 행정사무원 1인 의무
 - 인원 증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자체 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음(행정사무원 1인 의무 지방비 지원)

□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행정사무원 필요센터 32곳	1,024,000	32,000*32곳	사회복지사 4급 2호 기준

수어통역센터 업무환경 개선- 행정사무원 의무 배치를 위한 최소 운영기준 제시

□ 필요성

-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브리핑에 수어통역사가 대두되면서 수어통역센터 인력 부족 현상 발생
- 수어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업무를 수반해야 하는 수어통역센터 비선호
- 수어통역센터 재직자 수어통역센터 행정업무로 수어통역 기술 및 자기 개발 시간 부족
- 경기도에 청각장애인복지관의 부재로 수어통역센터가 지역 청각장애인 복지관 역할을 수행
- 수어통역은 부단한 자기개발이 필요한데 통역의 기술을 습득할 시간 확보 부족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에는 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1개소와 31개 시군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시군 수어통역센터의 인력은 지역센터에 따라 다름(8명~4명)
- 수어통역사 행정업무 수반에 대한 부담 가중
- 수어통역 업무는 업무의 강도가 높고, 개인의 역량이 수어통역에 영향을 미침

□ 대안제시

- 수어통역센터에 행정사무원 의무 배치를 통해 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사의 업무 부담 축소
- 지역 수어통역센터의 홍보와 지역 연계를 위해 사회복지사 필요

□ 소요예산

수어통역센터 32개소 * 행정업무 전담자 1인(32,000,000원) = 1,024,000,000원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

□ 필요성

-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2021년 기준 578,668명으로 전국의 장애인 2,644,700명 대비 21.9%로 가장 많은 수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경기도 지역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역할과 비중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음.
- 성인 장애인의 다양화된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사자 단체의 열악한 공간을 개선하여 그 연계성과 활용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물리적 공간 통합을 통한 단체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적 수요 파악의 용이성,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도의 역량 제고 등의 순기능적 측면이 기대됨.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 단체들이 유형별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정보제공, 정책의 자기결정권과 참여, 동료상담 서비스, 자립에 필요한 기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망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이를 도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단체는 자체 예산의 부족, 기존의 좁은 공간과 월세 부담의 가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회원의 회비에 따른 운영 등으로 산하 31개 시군지역의 단체 및 회원을 지원하기는커녕, 자체 운영도 쉽지 않은 실정임.
- 회의공간, 교육 공간 등이 부족하여 각종 지원 프로그램 및 전체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외부 공간을 대관하느라 비용과 인력의 소모가 크며,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를 구하기도 어려움.
- 장애인 단체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관 상호간의 소통과 연대가 어려워 다양한 문제를 산발적으로 해결하다보니 연계성이 떨어짐.

□ 대안제시

• <u>경기도장애인회관의 건립</u>을 통한 장애인단체들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단체의 고유역할(정책제안 및 견제, 당사자 권리향상)의 활성화모색

● 타 시도 장애인회관 현황

지역	규모	운영주체	건립시기	입주단체(장애인단체)
서울	10층	한국장애인개발원	2008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등 12개 단체
부산	10층	장애인연합회	2013	부산장애인총연회등 13개 단체
인천	7층	시설관리공단	2008	인천농아인협회 등 18개 단체
대전	2개층	대전복지재단	2011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단체
강원	5층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2013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등 6개단체
충북	4층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2022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등 14개 단체
전북	2층	입주단체 운영위원회	2014	전북지체장애인협회등 9개 단체
경남	3층	경남사회복지협의회	2015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 9개 단체
광주	신축중			
제주	3층	제주장애인총연합회	1996	제주장애인총연합회 등 6개 단체

□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	10,000,000,000	건물신축	도단위 장애인단체 입주

분야별 의제 12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센터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u>혼잣말 발달장애인에 "외국인이냐"... 뒷수갑 채워 채포 (JTBC 2021.7.7. 기사)</u>

중증장애인의 혼잣말을 잘못 들은 한 주민이, 외국인이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음. 출동한 경찰은 장애를 알아채지 못하고,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며 '뒷수갑'을 채워 끌고 경찰서로 연행함. 수갑을 찼던 부위가 아파 핥거나 웅크린 채 얼굴을 감싸는 문제행동을 함.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에 경찰은 "우즈베크 사람이냐"며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함. 고씨가 대답을 답하지 못하자, 경찰은 협박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체포함. 이후 손뼉을 치고 나뛰면서 불안감을 표시하는데 경찰은 다시 자리에 앉힐 뿐임. 고씨는 경찰 조사 이후 며칠간 머리를 스스로 부딪히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함.

-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리 박탈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박탈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행동 발생

□ 정책제안

●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센터 건립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6(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사업) 및 제35조(장애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의사소통지원)

- 1) 지역별로 운영 환경의 차별을 받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 국가 지침 마련
- 2)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 체계구축
- 3) 의사소통권리에 기반한 인적, 물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
- 4)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실시

□ 소요예산 : 미정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센터 건립

□ 필요성

-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 필요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 발달장애인의 욕구표현 및 해결(문제행동의 감소 효과)
- 의사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다.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현황 및 문제점

● <u>혼잣말 발달장애인에 "외국인이냐"... 뒷수갑 채워 채포 (JTBC 2021.7.7. 기사)</u>

중증장애인의 혼잣말을 잘못 들은 한 주민이, 외국인이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있었음. 출동한 경찰은 장애를 알아채지 못 하고,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며 '뒷수갑'을 채워 끌고 경찰서로 연행함. 수갑을 찼던 부위가 아파 핥거나 웅크린 채 얼굴을 감싸는 문제행동을 함. 강압적인 경찰의 행동에 경찰은 "우즈베크 사람이냐"며 외국인 등록증을 요구함. 고씨가 대답 을 답하지 못하자, 경찰은 협박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체포함. 이후 손뼉을 치고 나 뛰면서 불안감을 표시하는데 경찰은 다시 자리에 앉힐 뿐임. 고씨는 경찰 조사 이후 며칠간 머리를 스스로 부딪히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함.

-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권리 박탈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박탈
-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행동 발생
- 2021년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실태조사
 - 기간 : 2021.3.10.~3.24(2주간)
 - 대상: 서울시 거주중이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 및 주변환경 300명

연번	질문	답변
1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의사소통제약 을 받는다고 여기는지?	응답자의 73.5%는 제약이 있다
2	의사 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을 때는 언제인가요?	장애인 : 일상생활(23.75%), 직장과 학교(21.75%) 주변환경 : 일상생활(37.31%), 공공기관 이용시(12.94%)
3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는 무엇인가요?	1순위: 장애로 인해 2순위: 상대방이 소통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의사소통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의 부족
4	당사자와 주변환경은 어려움을 해결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장애인: 스스로 해결함(33.75%),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함 (33.75%) 주변환경: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청함(50.25%) 장애인 당사자에 비해 주변이나 기관의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5	장애인 이용 기관 중 의사소통 매뉴얼 이 가장 필요한 곳은?	1위: 공공기간 33.75% 2위: 장애인 복지기관(23.75%)
6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은?	1순위: 대화 상대방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2순위: 전연령 대상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의사소통 방법 개선 3순위: 다양한 환경에 의사소통 접근성 높이기/ 개별의사소통 특성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

(2021년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실태조사 /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 대안제시

●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센터 건립

- 1) 지역별로 운영 환경의 차별을 받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 국가 지침 마련
- 2)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의사소통 지원 체계구축
- 3) 의사소통권리에 기반한 인적, 물적, 사회적 인프라 구축
- 4)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실시

분0별 의제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소규모 장애인거주시설(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기정)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 배경

- 장애인복지법 개정(2011.2)따라 장애인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이용시설 에서 장애인거주시설로 유형변경됨
-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 거주시설로 지방이양사업 분류되어 중앙환원된 유형별 거주시설과는 다른 지원체계로 지원되고 있고 또한 지방이양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는 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단기거주시설 인력지원기준'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현황 및 문제점

- 단기거주시설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고 돌봄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52시간제 이후 법적 위반사항과 노사문제 발생)
 - 일시보호 기능으로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은 소규모 거주시설로 지방이양사업 분류되어 중앙환원된 유형별 거주시설과는 다른 지원체계 로 지원되고 있고 경기도는 복지부'장애인복지사업안내 단기거주시설 인력 지원기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경기도에서는 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종사자 인력 배치기준에 TO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거주시설에는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게 경기도의 현실이고, 그 결과에 따른 문제(법위반 문제, 장애인서비스 질저하 문제, 노사문제, 인건비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는 오롯이 시설에 전가하고 있음

[복지부]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침내용)			[경기도] 장0	배인복지사업안내(지원현황)
직종별	배치기준	비고	직종	경기도 지원내용	현재 상황
시설장	1명	시설장 상근원칙	시설장	1명	좌동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종사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급이상 복지사가 1명 이상이어야함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지원 내용만 보면 2.5명당 1명의 종사자가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음. 그 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거주장애인 15명 시설의 경우 종사자 1명이 이용인 7.5명을 돌봄을 해야하는 상황임 (*52시간제 이후 현장은 더울 어려움 발생)
사무원 또는 복지지원직	1명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가 5명 미만일 경우에 한함	사무원 또는 복지지원직	0명	TO가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인력 지원 없음
조리직	1명	1명 배치	조리직	1명	경기도 7종 지원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특수근무수당 지 원 안 됨

- 2015년 장애인거주시설의 국고 환원 당시,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 홈)은 제외되어 현재 17개 시도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서비스 수준도 지역마다 천차만별임.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경우 장애인 돌봄인력 1명 365일 근무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임
 - 2021. 7. 1일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법적 위반이 되는 상황임
 - 또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의무교육 등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고, 진해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질적 문제와 안전문제에 노출되는 상황임
 - [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인건비 지원 기준 : 2명 이내의 종사자 지원

[복지부] 202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21년 140P 참조)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원현황)
공동생활가정 2인 이내의 종사자 인력지원	- 경기도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 종사자 1명지원 * 직원은 연차휴가, 의무교육 이수 등 어려운 상황임 (52시간제 이후 더 어려운 상황)

□ 대안제시

조리직

- 지방이양사업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복지부]장애인복지사업안 내] 종사자 배치기준 현실적으로 반영 필요(거주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반영 필요)
- 또한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조리원과 계약직원의 경우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개별로 주고 있는 '특수근무수당' 지원 필요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지원현황)						
직종	현재	개정(안)	개정(안) 내용			
시설장	1명	1명	- 좌동 /			
사회재활직 및 복지지원직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이용장애인 2.5명당 3명	- 근로기준법 준수할 수 있는 돌봄종사자 현실적인 지원 필요 * 내용만 보면 2.5명당 1명의 종사자가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다 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음. 거주장애인 15명 시설의 경우 종 사자 1명이 거주인 7.5명을 돌봄을 해야하는 상황임(*52시간 제 이후 노사노무 문제까지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 발생) 8시 간 근로 시 1명의 종사자를 배치해야 함			
사무원 또는 복지지원직	0명	1명	- 복지부 TO 반영하여 경기도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지원 필요			
	1며	2며	- 경기도 7종 지원으로 종사자에게 개별지원하고 있는 '특수근무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재 365일 돌봄인력 1명에서 근로기준법(52시간제) 준수할 수 있 도록 2명 돌봄인력 충원

수당'과 TO 현실적인(52시간제) 지원책 필요

□ 소요예산 :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원기준 반영

2명

1명

분0별 의제 1/4

경기도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충

경기도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충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정신질환자 수를 10만명으로 추정해보면 경기도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2021년 12월 기준 55개소 884명)을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이용가능 인원은 0.1%도 되지 않음.
-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중 16개 기초단체에만 정신재활시설이(55개소)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15개 시·군의 기초단체는 시설이 미설치되어 경기도민 사이에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시설 설치·운영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어왔고, 시설 설치 후 최소 1~3년이 경과한 후에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민간 위탁운영에 매우 큰 현실적 어려움과 제약을 낳고 지역적 편중을 초래하며, 보조금 지원을 받기 전까지 질적인 시설 서비스 제공·운영을 심각히 저해함.

□ 정책제안

● 경기도내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되지 않는 15개 기초단체에 이용시설(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최소한의 운영시설 수를 확보할 것. 더불어 최소한 2030년까지 단계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경기도민의 1% 이상이 정신재활시설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규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경기도만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만들어 효율적인 시설운 영이 되도록 해야 함.

□ 소요예산

구분	2022년	2025년	2030년
정신재활시설 수	607H	70개	100개
이용정원수	953명	1300명	3000명
소요예산	20억	30억	100억
비고	미설치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	31개 시군에 2개 이상 설치	31개 시군에 3개 이상 설치

경기도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확충

□ 필요성

● 정신질환자들 중 병원에서 퇴원한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재발과 재입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약물치료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임. 약물치료는 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지만 입・퇴원을 반복하는 동안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사회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정신질환자는 약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이차적인 결함으로 사회적 능력의 결핍되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와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초래되어 병의 악화와 재입원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됨.

정신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의료적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지적 기반도 필요함.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사회적응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지역사회내의 서비스체계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은 중요하며 시대적 상황에 맞게 확충되어야 함.

- 정신재활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보면
 - 1) 사회기술, 일상생활관리, 취업, 약물관리 등을 향상시키고,
 - 2) 재활서비스가 재발률, 입원횟수, 입원일수, 기능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 3) 효율성관련 연구에서는 직업재활, 입원기간 변화, 의료비 절감 등이 나타남.
-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에 평생 유병률은 27.8%로 일반 인구 4명 중 1명은 평생 한번 이상 정신과적 질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평생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4.8%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한 적이 있는 경우는 3.7%, 평생 정신장에 진단자 중 상담 경험은 13.0%로 나타남. 일평생 살면서 정신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모든 사람들의 정신건강은 사회가 발달됨에 따라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또한 코로나로 인한 대인관계 형성의 한계 발생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인간성 상실을 우려하는 시대로 변화해 가면서 정신건강은 더욱 더 중요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대두됨.
 - 이러한 시대적 변화로 정신장애인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의 턱없는 부족으로 다른 시 군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경기도차원의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임.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정신재활시설 수는(2021년 12월 기준)

주간재활	직업재활	공동생활	지역사회전환시설	생활시설	종합시설	합계
10	3	37	3	1	1	55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중 16개 기초단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정신재활시설 수는 55개소이며 총 15개 시군의 기초단체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없음. 정신재활시설 중에도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공동생활가정(4~8인)이 67.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경기도민 사이 에도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 경기도 정신질환자 수를 10만 명으로 추정해보면 경기도에 설치된 정신재활시설(현재 55개소 884명)을 이용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이용 가능 인원은 0.1%도 되지 않음.
-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민간에게 위탁됨에 따라 정신재활시설 설치이후 보조금이 최소 1~3년이 경과한 이후에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에서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지역적 편중을 초래하는 등 보조금 지원을 받기 전까지 질적인 운영이 사실상 힘든 상황을 초래함. (2021년 12월 현재에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이 5개로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정신재활시설 설치기준 마련으로 지역 간 편중을 없애고 시설확충으로 타 시군으로 이동의 번거로움과 정신장애인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함.

□ 대안제시

● 경기도내 정신재활시설이 설치 운영되지 않는 기초단체에 이용시설(주간재활 및 직업재활)은 1개 이상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동생활가정은 인구수에 비례하여(10만 명당 1곳 이상) 기초 단체에 최소한의 시설을 갖출 것.

또한 경기도민 중 정신재활시설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받기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30년까 지 단계적인 확충을 통해 최소한 경기도민의 1% 이상이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신규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구체적인 경기도만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만들어 효율적인 시설운 영이 되도록 해야 함.

□ 소요예산

● 경기도 31개 시군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려면 인구수에 비례하거나, 시군의 정신질환자 수를 파악하여 이용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해야 함.

구분	2022년	2025년	2030년
정신재활시설 수	60개	70개	100개
이용정원수	953명	1300명	3000명
소요예산	20억	30억	100억
	미설치 시군에 1개소 이상 설치	31개 시군에 2개 이상 설치	31개 시군에 3개 이상 설치
비고	이용시설은 신축하지 않고도 지자체에서 공간을 마련하면 운영이 가능하며, 공동생활가정은 최소한의 예산 마련 방안 필요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지원 현실화 - 보건복지부 기준 준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지원 현실화(보건복지부 기준 준수)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내 독립적인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용 장애인의 약 80%가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이며, 도전적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아 사회복지사 1명 당 4명의 장애인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 불가능
- 기능직, 사무원이 지원되지 않아 사회복지사가 아침과 저녁 차량운행(등하원 송영), 점심식사와 간식 조리 및 배식, 사무, 회계 및 행정, 이용인 지원(프로그램, 돌봄, 신변처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까지 담당하고 있어 직무 강도가 높고, 이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짐
 - 수시 발생하는 행정업무로 사회복지사가 빠지면 서비스의 공백 및 서비스 질 저하 발생

□ 정책제안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3명당 사회복지사 1명 지원(보건복지부 기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기능직, 사무원 배치
-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추가인력 지원기준 마련 및 시행

□ 소요예산

		(E11 · EE)
세부	예산액	산출근거
내용	○ 총 계 : 11,382,937천원 (경기도 :	1,138,293천원, 31개 기초자치단체 : 10,244,643천원)
3:1 배치	◇ 소 계: 5,331,420천원- 기본급 4,056,810천원-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497,060천원- 퇴직적립금 371,869천원(사회재활교사 3급 5호봉)	○ 기본급: (2,331,500원×12개월)×145명 = 4,056,810,000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3,843,070원×145명 = 497,060,000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퇴직적립금: 2,899,200×145명 = 371,869,900원
사무원 배치	○ 소 계: 3,555,831천원 - 기본급 2,925,450천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386,601천원 - 퇴직적립금 243,780천원 (사무직 1급 1호봉)	○ 기본급: (1,950,300원×12개월)×125명 = 2,925,450,000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2,666,220원×125명 = 386,601,900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퇴직적립금: 1,950,240×125명 = 243,780,000원
기능직 배치	○ 소 계: 2,495,684천원 - 기본급 1,952,796천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380,163천원 - 퇴직적립금 162,730천원 (기능직 1급 1호봉)	○ 기본급 : (1,914,500원×12개월)×85명 = 1,952,796,000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 2,621,820원×85명 = 380,163,900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퇴직적립금: 1,914,480×85명 = 162,730,800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지원 현실화(보건복지부 기준 준수)

□ 필요성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내 독립적인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을 활동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이용 장애인의 약 80%가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이며, 도전적 행동 등으로 다른 사람의 지원 이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아 사회복지사 1명 당 4명의 장애인에게 최선의 서비스 제공 불가능
 - 기능직, 사무원이 지원되지 않아 사회복지사들이 아침과 저녁 차량운행(등하원 송영), 점심식사 조리 및 배식, 사무, 회계 및 행정, 이용인 지원(프로그램, 돌봄, 신변처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 업무강도가 높고, 서비스 질 하락
 - 수시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위해 1명의 사회복지사가 빠지게 되면, 이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에 공백이 발생하고 서비스 질은 하락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이용 장애인 3명당 1명의 사회복지사 및 기능직(운전 원, 조리원)과 사무원 배치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실태조사』, 서해 정·장기성·송기호, 2019)
 - 이용 장애인의 약 80%가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이며, 다른 사람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높음
 - 이용 장애인의 의사소통 정도(전혀 불가능 20.2%, 보완적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하여 일부 의사소통 가능 15.8%)
 - 뇌전증, 행동조절 등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장애인 36.2%
 - 자해나 타해, 기물파손, 이탈행위, 소리 지르기 등의 어려운 행동(도전적 행동)을 가진 장애인 63.4%
 - 신변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35.3%(완전한 도움 필요 17.7%, 대부분 도움 필요 17.6%)
 -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26.1%(완전한 도움 필요 12.5%, 대부분 도움 필요 13.6%)
 - 외부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54.0%(완전한 도움 필요 27.4%, 대부분 도움 필요 26.6%)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2)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은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이용 장애인 3명당 1명, 기능직 1명, 사무원 1명(지자체 협의)으로 명시
 -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지원 강도)에 따른 인력지원 기준 미반영으로 적절한 기준이 아님

-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1명당 이용 장애인 4명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기능직이나 사무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 정도를 반영한 인력지원 기준이 부재함
 - 여주시 사무원 1명, 기능직 1명 지원
 - 평택시, 의왕시, 의정부시, 양주시 기능직 1명 지원
 - 수원시 정원 70명 이상 시설에 사무원, 기능직 지원
 - 용인시, 김포시(일부 시설) 사무원 또는 기능직 지원
 -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일부 시설에 기능직 지원
 - 화성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1개 시설에 기능직 지원
 - 오산시, 이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지원 없음
- 장애인주간보호서비스는 대인서비스로, 서비스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에 영향을 받음
 - 지역별 종사자 배치기준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기능직과 사무원 지원이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리, 차량운행, 행정과 회계 등의 업무로 인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 특히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중 서비스 필요 정도가 높은 비율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장애인 수에 따른 사회복지사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서비스 질 저하가 가중됨
 - 한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은 높은 직무 강도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낮아지며, 이는 높은 이직률(근속기간 평균 45.6개월)로 이어짐
 -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전문 지식이 많은 종사자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짐

□ 정책요구사항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3명당 사회복지사 1명 지원(보건복지부 기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기능직, 사무원 배치

□ 대안제시

●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추가인력 배치기준 마련 및 시행

□ 소요예산

- 산출기준(2021년 12월 현재, 145개 시설)
 - 사회재활교사(사회복지사) 시설 당 1명 추가 지원
 - 사무원이 없는 시설 125개소, 기능직이 없는 시설 85개소에 각 1명의 사무원, 기능직 배치
 - 총소요 예산 11,382,937,500원 : **경기도 소요예산 1,138,293,750원** (부담비율 10%), 기초자 치단체 소요예산 10,244,643,750원 (부담비율 90%)

세부	예산액	산출근거	위 · 신편 <i>)</i> 비고				
내용	○ ÷ 게 · 44 000 007 ft01 / 거기도 ·	4.400.000.000.000.000.000.000.000.000.0					
	○ 송 게 : 11,382,937전원 (경기도 :	1,138,293천원, 31개 기초자치단체 : 10,244,643천원)					
3:1 배치	○ 소 계 : 5,331,420천원 - 기본급 4,056,810천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497,060천원 - 퇴직적립금 371,869천원 (사회재활교사 3급 5호봉)	○ 기본급 : (2,331,500원×12개월)×145명 = 4,056,810,000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 3,843,070원×145명 = 497,060,000원 - 국민연금 1,673,540×145명 = 216,458,900원 - 건강보험 1,299,820×145명 = 168,115,900원 - 장기요양보험 159,460×145명 = 20,619,000원 - 고용보험 409,070×145명 = 52,910,500원 - 산재보험 301,180×145명 = 38,955,700원 ○ 퇴직적립금: 2,899,200×145명 = 371,869,900원	145 개소				
사무원 배치	○ 소 계 : 3,555,831천원 - 기본급 2,925,450천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386,601천원 - 퇴직적립금 243,780천원 (사무직 1급 1호봉)	○ 기본급: (1,950,300원×12개월)×125명 = 2,925,450,000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2,666,220원×125명 = 386,601,900원 - 국민연금 1,161,120×125명 = 145,140,000원 - 건강보험 901,800×125명 = 112,725,000원 - 장기요양보험 110,640×125명 = 13,830,000원 - 고용보험 283,740×125명 = 35,467,500원 - 산재보험 208,920×125명 = 26,115,000원 ○ 퇴직적립금: 1,950,240×125명 = 243,780,000원	125 개소				
기능직배치	○ 소 계 : 2,495,684천원 - 기본급 1,952,796천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380,163천원 - 퇴직적립금 162,730천원 (기능직 1급 1호봉)	○ 기본급 : (1,914,500원×12개월)×85명 = 1,952,796,000원 ○ 사업주사회보험부담금 : 2,621,820원×85명 = 380,163,900원 - 국민연금 1,141,800×85명 = 97,053,000원 - 건강보험 886,800×85명 = 75,378,000원 - 장기요양보험 108,720×85명 = 9,241,200원 - 고용보험 279,060×85명 = 23,720,100원 - 산재보험 205,440×85명 = 17,462,400원 ○ 퇴직적립금: 1,914,480×85명 = 162,730,800원	85 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선진국은 장애인의 고용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 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정부 및 각 지자체 모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을 위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차원에서의 지원을 확장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적극 보장, 자립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조건없이 누리도록 지원함에 우선순위의 정책임.
-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과 보충급여 등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매우 중요한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중의 하나임.
- 이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경기도에 2021년 기준 143개소이며 이용장애인은 약 4,000명임. 이중 근로장애인 2,700명, 훈련장애인 1,300명으로 대부분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3,300명임.
- 하지만 코로나 19의 직격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도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다수의 장애인직 업재활시설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음.

□ 정책제안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근로장애인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 근로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근로장애인 인건비 일부 지원	14,400,000천원	근로장애인 3,000명×400천원×12월	
근로장애인 희망적금	3,000,000천원	근로장애인 3,000명×1,000천원×연1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 필요성

- 대부분의 선진국은 장애인의 고용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 은 국가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 ☞ 호주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전국에 600개소임. 약 2만명의 장애인이 고용중이며 80%가 지적장애인임. 이중 96%가 장애연금을 받고 있음.
 - ☞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9권 제59조 제2항에 의거 노동지원금 개인당 월 52유로를 지급하고 있음.
- 정부 및 지자체 모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장애인을 위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보장차원에서의 지원을 확장하여 중증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적극 보장, 자립강화 를 도모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조건 없이 누리도록 지원함에 우선순위의 정책임.

□ 현황 및 문제점

-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과 보충급여 등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성인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을 보완하고 이를 토대로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매우 중요한 중증장애인 고용정책 중의 하나임.
- 이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경기도에 2021년 기준 143개소이며 이용장애인은 약 4,000명임. 이중 근로장애인 2,700명, 훈련장애인 1,300명으로 대부분 중증의 발달장애인이 3,300명임.
- 하지만 코로나 19의 직격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도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다수의 장애인직 업재활시설은 근본적인 위기를 맞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고충이 심화 되는 상황임.
- 첫째, 최근 탈시설, 사회통합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 일반노동 시장 전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노동시장 전이에 따른 시설 수익, 생산성 감소 보전을 위한 지원이 전혀 없고, 장애인 고용유지와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전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둘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훈련과 같은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인 동시에 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장(business)기능을 요구하고 있음. 즉, 장애인 고용, 훈련유지, 처우개선 등을 위해 수익성이 높으면서 장애인이 생산·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업종을 개발해야 함. 이렇듯 생산·경영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에서는 배제되고 있음.
- 셋째, 2008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개편이 되었으나, 유형개편 당시 지원하기로 한 인력충원 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005년 지방 이양과 맞물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장애 인복지시설 사업 안내에서 제시하는 지원기준은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성과에 대한 요구만 높아지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 이러

- 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적용제외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
- 마지막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피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장애인 당사자는 기존 소득에 70%만 보장을 받게 되면서 생계에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휴관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음(서정민, 김낭희, 2020). 또한, 시설 종사자들은 본연의 업무수행과 더불어 장애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생산에 투입되어 장애인에게 70%의 소득을 보장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휴관을 권고한 정부나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종사들만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 정책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향후 코로나 19가 종식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책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대안제시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인건비일부를 지원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고용한 근로장애인의 고용유지 및 고용확대를 통해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들에게 매월 40만원의 보충급여 지급.
 - ☞ 근로장애인 가칭"희망적금" 가입을 통해 근로장애인들에게 저축장려금 연1회 100만원 지급.

□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근로장애인 인건비 일부 지원	14,400,000천원	근로장애인 3,000명×400천원×12월	
근로장애인 희망적금	3,000,000천원	근로장애인 3,000명×1,000천원×연1회	

분야별 의제

지역복지 분야



경기도 균형발전 및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 추진체계 구축(다문화)

경기도형 균형발전 및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를 위한 포괄적 추진체계 구축(다문화)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에 힘입어 중앙정부의 법적 기반은 없지만, 기초단체별 선도적 지역사회기 반 복지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법적 기반(중앙 차원의)이 취약해 사업의 확장이나 표준화, 해당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 비일관적이고 편차가 큰 상황임(특히 이주민 영역이나 다문화영역이 그러함)
- 경기도 차원의 시.군.구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체계 필요

□ 정책제안

- 기초지자체 자치법규를 통해 설치·운영되는 신규 비법정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u>경기도형 사회복</u> 지시설 인준·지원체계 마련
 - 1) 경기도 행정지원체계구축(전담부서 또는 전담 인력 지정)
 - 2) 경기도형 업무통합 지침 개발. 해당 종사자에 대한 일관적 처우개선책 수립.추진
 - 3) 경기도+시군 공무원 협의체 구성
 - 4) 민·관 거버넌스 체계 작동

경기도 균형발전 및 사회복지 영역의 확대를 위한 경기도형 포괄적 사회복지 추진체계 구축

□ 필요성

●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에 힘입어 중앙정부의 법적 기반은 없지만, 선도적 지역사회기반 복지시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중심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앙법적기반이 취약해 사업의 확장이나 표준화, 해당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 비일관적이고 편차가 큰 상황에서 포괄적 추진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단체들은 지방 정부의 역할 강화에 힘입어 중 선도적 지역사회기반 복지시 설을 확대하고 있음(특히, 다문화 이주민 영역)
- 그러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법적 기반이 취해 사업의 확장이나 표준화가 어렵고, 특히 해당 시설의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이 비일관적이고, 기존 제도권 안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의 처우와는 그 편차가 큰 상황임
- 경기도는 가장 많은 사회복지 이용시설, 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광역지자체로서 기초지자체와 는 다른 행정적 체계이며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31개 시군구를 균형 있게 지원하는 포괄적 추진체계 구축방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
- 사회복지 서비스 및 사회보장 영역의 확대와 일관적 추진을 위한 경기도형 포괄적 추진체계 구축 이 필요함

□ 대안제시

- 지자체 자치법규를 통해 설치·운영되는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인준·지원체계 마련
 -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의 환경적 특성상 특별히 조례제정을 통해 설립한 사회복지 관련시설은 지역사회 대응성이 높은 반면, 제도권 밖의 시설들로 취급되면서 시설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을 보장받지 못함.
 - 경기도형 인준제도 도입과 그를 통한 일관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1) 경기도 행정지원체계구축(전담부서 또는 전담 인력 지정)
 - 2) 경기도형 업무통합 지침 개발, 해당 종사자에 대한 일관적 처우개선책 수립.추진
 - 3) 경기도+시군 공무원 협의체 구성
 - 4) 민·관 거버넌스 체계 작동



지역자활센터 기본 인프라 100% 지원,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사업 확대

지역자활센터 기본인프라(시설) 100% 지원과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사업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현재 250개 지역자활센터중 약 154개 센터가 무상임대 지원을 받고 있고, 약 80개의 센터가 월임대료를 내고 있음. 또한 기본시설인 상담실은 68%, 교육장은 65%, 회의실은 55%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책사업인 자활사업 운영이 시설여건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경기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약60%인 19개 센터가 기본 시설조차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유상임대보증금은 약 22억원에 달하며, 연간 합계 임대료는 약 5억원에 육박하여 최근 4년간 20억원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음.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시설 뿐만이 아니라 자활사업의 운영에 부합하는 자활사업 운영 창고, 직능 또는 체험실습장 등의 시설의 부재로 좀 더 효율적인 자활지원서비스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되어 자활/자립을 준비하는 주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 공간의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인권의 문제와 사업의 생산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2016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이며(연간 88kg), 최근 코로나로 인해 2019년 대비 음식 배달은 76.8%, 택배는 20.2%, 플라스틱은 13.7% 증가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한국은 가파른 플라스틱페기물의 증가로 매립지 및 페리물처리량이 임계치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2017년 기준 물질재활용률이 22.7%로, 같은 해 EU의 물질재활용률 40%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
- 정부정책도'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저책의 대전환을 계획하고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고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해서 카페, 행사,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를 위해 삶의 문화개선과 다회용기사용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정책제안

- 경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공통시설규정(안) 마련 및 기본시설 지원
 - 1) 지역자활센터 특성에 맞는 '표준시설 설치규정(안)'을 마련하여 단계적 지원
 - 2) 3년간의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경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본시설 지원 완비
 - 3) 또는 공공시설 무상임대 제공
- 다회용기 전환을 통한 친환경 사업 필요
 - 1) 일회용품 주요 배출업장인 커피전문점, 장레식장, 식당(배달)등에 대해 다회용기로 전환하여 일회용품 저감 추진
 - 2) 지자체별로 다회용기 세척장을 구축하고 자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연계하여 세척업무 수행 (수거-세척-배송)
 - 3) 도민과 업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탄소중립보조금(서비스비용 일부보조)지원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

□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지역자활센터 건립비용	28,500,000	센터 당 1,500,000천원 이내 19개소	4년간 매년 5개소 건립
세척시설 구축비	4,050,000	50평기준 세척시설 100,000천원 다회용기 구비비용 5,000천원	4년간 27개 시군 확대
탄소중립 보조금	건당 발생	서비스 건당 50원~500원 보조	서비스비용의 30% 보조예상
ЖПОГЛИ	1,890,000	보증금 70,000천원 이내 27개소	4년간 27개 시군 확대
점포임대비	_	월세	자활사업 자부담
세척시설 조성비	-	칸막이, 방수, 전기 등 인테리어비용	자활사업 자부담
홍보비	_	자활사업 자부담	

지역자활센터 기본인프라(시설) 100% 지원과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제공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사업 확대

□ 필요성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급여 전달체계로서 2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타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시설과 공간에 대한 지원 미비로 이용자가 편하게 이용하거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함.
- 지역자활센터는 공공부조 전달체계로서 자활사업 운영이라는 타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른 일자리와 복지가 결합된 근로연계복지를 운영하는 시설임.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종합적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공통적인 시설지원이 이루어져야 국책사업인 자활지원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40%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고, 탄소중립 가속화 추세에 따라 연계된 공공사업을 발굴하고 경제적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필요함.
- 코로나 19로 일회용품 사용 급증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자활사업을 연계하여 일회용 저감 사업과 더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필요함.

□ 현황 및 문제점

- 2021년 기준 250개 지역자활센터중 약 154개 센터가 무상임대 지원을 받고 있고, 약 80개의 센터가 월세를 내고 있음. 또한 기본시설인 상담실은 68%, 교육장은 65%, 회의실은 55% 정도만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책사업인 자활사업 운영이 시설여건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음.
- 2021년 기준 경기 33개 지역자활센터 중 약60%인 19개 센터가 기본 시설조차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유상임대보증금은 약 22억원에 달하며, 연간 합계 임대료는 약 5억원에 육박하여 최근 4년간 20억원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음.
-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시설 뿐만이 아니라 자활사업의 운영에 부합하는 자활사업 운영 창고, 직능 또는 체험실습장 등의 시설의 부재로 좀 더 효율적인 자활지원서비스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기도 함.
-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되어 자활/자립을 준비하는 주민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업장 공간의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좁은 공간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어, 인권의 문제와 사업의 생산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2016년 기준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 3위이며(연간 88kg), 최근 코로나로 인해 2019년 대비 음식 배달은 76.8%, 택배는 20.2%, 플라스틱은 13.7% 증가하여,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한국은 가파른 플라스틱폐기물의 증가로 매립지 및 폐리물처리량이 임계치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2017년 기준 물질재활용률이 22.7%로, 같은 해 EU의 물질재활용률 40%에 비해 현저히 저조함.
- 정부정책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저책의 대전환을 계획 하고 2022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고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해서 카페, 행사, 장례식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를 위해 삶의 문화개선과 다회용기사용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대안제시

- 경기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대한 공통시설규정(안) 마련 및 기본시설 지원
 - 지역자활센터 특성에 맞는 '표준시설 설치규정(안)'을 마련하여 단계적 지원
 - 4년간의 계획을 갖고 단계적으로 경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본시설 지원 완비
 - 또는 공공시설 무상임대 제공
- 다회용기 전환을 통한 친환경 사업 필요
 - 일회용품 주요 배출업장인 커피전문점, 장레식장, 식당(배달)등에 대해 다회용기로 전환하여 일회용품 저감 추진
 - 지자체별로 다회용기 세척장을 구축하고 자활사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연계하여 세척업무 수행 (수거-세척-배송)
 - 도민과 업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더불어 탄소중립보조금(서비스비용 일부보조)지원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필요

□ 소요예산

(단위:천원)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지역자활센터 건립비용	28,500,000	센터 당 1,500,000천원 이내 19개소	4년간 매년 5개소 건립
세척시설 구축비	4,050,000	50평기준 세척시설 100,000천원 다회용기 구비비용 5,000천원	4년간 27개 시군 확대
탄소중립 보조금	건당 발생	서비스 건당 50원~500원 보조	서비스비용의 30% 보조예상
MTOITUHI	1,890,000	보증금 70,000천원 이내 27개소	4년간 27개 시군 확대
점포임대비	_	월세	자활사업 자부담
세척시설 조성비	_	자활사업 자부담	
홍보비	_	연간 프로모션 및 홍보비용 등	자활사업 자부담



노숙인 리스타트 사업 활성화

노숙인 리스타트 사업 활성화

□ 필요성

● 경기도에서는 2005년부터 노숙인들에게 근로를 통한 자활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노숙인 Re-start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노숙인의 탈노숙을 이끌어 왔으나 2018년 최저임금 상향의 영향으로 자활급여 단가는 상승했으나 보조금 동결의 영향으로 예산에 맞춰 운영되는 사업특성상 결원이 발생하여도 추가 인원 참여가 불가능하여 노숙인의 자활참여 인원은 해마다줄어들고 있음.

□ 정책건의

●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 탈노숙 시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리스타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실에 맞는 필요예산의 책정으로 참여 인원의 증가와 성공적인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 필요예산

(단위:천원)

	경기도(30%)	수원시(70%)	총예산	참여인원
2021년도 예산	303,140	707,326	1,010,467	43명
필요예산	523,248	1,220,914	1,744,163	67명

(수원희망지역자활센터 노숙인사업단 자료)

분야별 의제

경기도형 지역사회 기반 유연한 틈새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틈새지원센터' 설치

경기도형 지역사회 기반 유연한 틈새지원 플랫폼 구축을 위한 '틈새지원센터' 정책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 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사각 지대는 발생됨에 따라 틈새돌봄이 매우 필요한 바 경기도내 다양한 취약계층의 복지접근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온오프 거점 플랫폼을 형성하여 유연한 통합돌봄을 이루고자 함.
- 지역사회 중심으로 진행되는 돌봄서비스 및 취약계층 자립생활지원등은 기존 공공서비스를 기반 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진행 절차가 3-4주 이상의 선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 로 돌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지역사회 기반의 삶'은 공공서비스 외 지역마다 특색있는 복지정책에 따라 체감이 다를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틈새를 메우는 유연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
- 따라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내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지역마다 유연한 틈새지원 플랫폼 거점을 구축하여 공공성의 보장은 물론 돌봄공백의 최소화 및 돌봄인력의 확보등을 통한 경기도형 틈새지원 플랫폼 '경기도 틈새지원서 비스센터' 구축을 제안하고자 함.

□ 정책제안

- 돌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 마다 유연한 틈새돌봄지워 플랫폼 센터 구축
- 경기도 내 북부 및 남부 지역 중 8개 지역의 거점센터 확보하여 시범적 진행 후 경기도 내 전지역으 로 확대 (4권역별 2개소씩)
-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공백발생시 위기개입, 일시 돌봄인력확보, 돌봄대상자 일시보 호, 기타 다양하고 욕구에 부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등
- 전문적 교육을 통한 맞춤형 돌봄인력 확보, 지역내 안전망 구축, 지역내 돌봄현황분석 등

□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	산출근거	비고
틈새지원센터 운영비	480,000,000원	60,000,000원*8개소	인건비 40,000천원 (부대경비포함) 사업비 20,000천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법인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민간 법인 운영강화

□ 필요성

-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서비스원 및 복지재단등 출연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자부담 부담 없음
- 기울어진 운동장 사회서비스원 및 복지재단등 출연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법인(사무국)에 운영 비 지원
- 관이 민간을 바라보는 관점, 관이 불리하실때는 공공영역, 유리하실때는 민간영역 이라는 관점
- 대한민국, 경기도 복지 전달체계에 들어와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들은 모두 공공영역 법인으로 보고 지원해야 함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에서 동일한 사회복지시설을 유영함에도 출연법인과 소위 민간 법인 분리
- 관 주도형 시설운영시 자부담 부여하지 않으나 민간에 과도한 자부담 요구
- 수익사업등을 제약 받고, 정의연, 미르 사태등 정치권 법인들의 문제로 파생된 모금 및 후원금품 운용 제약에 의해 모순된 생태계가 형되어 불법 및 편법이 자행 될 수 있음

□ 대안제시

-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은 운영비의 3-5%를 법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장 또는 산하 시설 직원 중 법인 규모에 맞추어 필요인원은 법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직 규정을 두도록 함.
- 사회서비스원, 복지재단등 출연재단에 준하는 운영지원 필요
-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동일 운영 동일 지원 운칙을 준용해야
- 공공 비영리 영역에서 민간 자부담금에 대한 부분 제거 복지국가책임제 역행

□ 소요예산

- 정책 사업으로 별도 예산 불필요
- 정책 의지에 따라 조정 가능함.

분야별 의제

아동, 청소년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내 사회복지사 확대

이동·청소년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內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를 통해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긍정적 자아개념, 가족건강성, 공동체 인식 등 효과성 입증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을 발굴·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그러나 '21년 기준, 경기도 전체 2.416교 중 240교에 인력 배치, 배치율 9.9%로 최하위권 (전국 14.2%, 서울 22.3%)
-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해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연장의 불투명으로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 또한 초·중학교 중심의 배치로 서비스 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져 고등학교는 돌봄·안전망의 사각지 대 발생
 - ※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240교 中 직업계고 3교, 일반고 6교에 불과

□ 정책제안

- 아동·청소년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內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 1) 학교 內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로 보편적 아동·청소년의 복지 실현
 - 2) 학교 내 사회복지사 법제화 노력
 - 3) 고등학교 사회복지사 확대 배치

□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	비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27,180,000	사업비(인건비+운영비)	도교육청 22년 예산
(임기 내 25% 수준)		45,000천원*604교	8,600,507천원

이동·청소년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內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 필요성

-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증가
 - '0년 4월 아동권리보장원 조사 결과, 5시간 이상 홀로 가정에 있는 아동 27.7%
 - 교육 분야 양극화 산출 결과, 초등학교 사교육비와 학습시간, 부모의 학습지원 등에서 중간집단 이 하향으로 편향된 경향성이 나타남
-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육적 성장에 기여
 - 학교 내 사회복지사 주요 역할: 학교생활 적응지원, 문제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활용, 학부모와 교사 지원 등
- 또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 자아개념, 가족 건강성, 학교생활 적응, 공동체 인식 등에서 비사업학 와 비교하여 효과성을 확인
- 복지 사각지대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는 국가가 인정한 전문 영역으로 배치 확대 지속해서 제안해왔음.
 - '20년 12월 12일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2020.11.30.)
 - 제1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위기아동 문제 관리를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의무 배치가 제안 (2020.7.17.)
 - '21년 국정감사에서 특성화고등학교는 복지 사각지대로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됨. 학교 내 사회복지사 전국 1,651명 중 직업계고 34명 뿐 (강득구 의원실, 2021.10.12.)

□ 현황 및 문제점

- '21년 기준, 경기도 전체 2,416교 중 240교에 인력 배치, 배치율 9.9%로 최하위권 (전국 14.2%, 서울 22.3%)
 - (비고)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인력 배치율은 4.78%(117명)
 - (비고)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학령기(8~19세) 수급 아동은 5만7686명, 전체의 1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학교 내 교육복지 전문인력 배치 비율]

(기준: 2021. 6. 18.)

																(· IL	. 2021	. 0. 1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전체 학교	1,314	616	447	514	314	298	242	93	2,416	626	469	711	764	822	917	959	188	11,711
학교 인력	293	145	130	129	88	61	27	9	240	87	33	69	123	86	85	46	16	1,667
비율 (%)	22.3	23.5	29.1	25.1	28.0	20.5	11.2	9.7	9.9	13.9	7.0	9.7	16.1	10.5	9.3	4.8	8.5	14.2

※ 출처: 2021 각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 참조, 지자체, 민간지원사업 포함,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정리

●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해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과의 업무협약 연장의 불투명으로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

- 또한 초·중학교 중심의 배치로 서비스 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져 고등학교는 돌봄·안전망의 사각지 대 발생
 -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240교 中 직업계고 3교, 일반고 6교에 불과

□ 대안 제시

- 아동·청소년 돌봄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內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 임기 내 25% 수준(240교→604교) 확대 배치
- 학교 내 사회복지사 법제화 노력
 -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 학생 담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역할 확대에 있어 제한적임
 - ※ 대상학생: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법정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훈령 제3조)
 -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법제화 추진 필요
 - 시·도교육감 실무협의회·총회 정책의제 제안과 교육부 직접 건의
 - 법제화 방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개정 '학교사회복지'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학교 내)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신설 등이 있음
- 고등학교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로 돌봄·안전망 강화
 -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 위기학생 지원, 학업 중단 예방, 지역사회 연계 진로 지원 기대

□ 소요예산

세부내용	예산액	산출 근거	비고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임기 내 25% 수준)	27,180,000	사업비(인건비+운영비) 45,000천원*604교	도교육청 22년 예산 8,600,507천원

복지경기 실현을 위한 6.1 지방선거 사회복지 정책제안

발행일 2022년 4월

발행처 경기도사회복지연대 6.1 지방선거 사회복지 위원회

인 쇄 디자인세창(T. 1544-1466)

6.1 지방선거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제안